코로나19 관련 서울특별시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2020.04.30.)

구분	주관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대출지원	서울시 관광정책과 서울관광민원센터	서울시 관광업계특별자금 대출지원	서울 소재 관광관련 사업자	7천만원(1.5%~1.82%)	02-2133-2808 02-757-7482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기대출금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매출액 10% 이상 감소 수입/수출/관광/공연 기업	원금 만기연장(1년) 및 상환유예(1회)	1357
		코로나 19관련 긴급경영안정자금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업 당 연간 10억원 이내 (3년간 10억원 이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소상공인	7천만원 (대출기간 5년)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1357
		코로나19 직접대출	개인신용평가 4-10등급인 업체이면서,코로나19피해소상공인	업체당 최고 10백만원, 5년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소상공인시장진 흥공단지역센터
	사회가치연대기금	코로나 대응 긴급운전자금지원	2-3월 매출총이익이 직전년도 동기간, 또는 직전 3개월평균과 비교해 50% 이하로 떨어졌거나 그럴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적경제조직, 정책자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조직	1천만원 이내, 1년 기간 단기 신용대출, 연이자 1.5%	02-2088-3288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코로나19 특별융자'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신용대출, 3년 조기상환/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긴급생활자금 : 최고3백만원이내 코로나19특별융자(한시운영) : 최고1천만원이내	융자사업팀 02-3668-0238
	신협, 신협사회공헌재단	무이자 대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포함 자영업자	1천만원(1년, 무이자)	1566-6000 042-720-1327
	신협	신협기대출금 이자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포함 자영업자	기존 대출 연 1.5% 이자 지원	1566-6000
보증지원	신용보증기금	우대보증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보증비율 상향(95%), 요율 차감(0.2%p)	1588-6565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	코로나 19 피해기업	보증지원(3억원이내), 요율 인하(1.0%)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매출액 15% 감소, 확진자 동선포함 등	한도상향(7천만), 기한연장(1년)	1588-7365
세제지원	서울시세무과	세제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피해자	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02-2148-1552 ~6
인건비지원	고용노동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지원금은 피보험자가 10인 미만 기업 제외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2.29. 이전인 피보험자 대상 (영세사업장(근로자 10인 미만) 무급휴직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또는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	□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일 최대 6.6만원,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무급휴업·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 □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3개월) 간 최대 150만원(월 50만원*)을 지원할 계획	1350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세부지원요건확인필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까지	월50만원*3개월(150만원) -> 1차 100만원, 2차 50만원 분할지급	*긴급고용안정지원신청전용홈페이지 구축중 *가까운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제공예정
		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	①중위소득 100%이하 가구('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②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③고용보험미가입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입증서류필요) ⑤(a)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0.2.23)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b)이전 대비 월평균소득30%이상 감소	가구당 50만원(최대1명, 1회)	02)2133-5412 2133-9504 2133-9505 2133-5559
서울시 지원사업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민친화G	2020년 서울시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 선정	예비마을기업, 2차.3차년도 마을기업	2차년도 30백만원 (후기투자형의 경우 50백만원), 3차년도 20백만원, 예비 10백만원 이내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서울산업진흥원	2020 G밸리 Scale-Up 지원사업 모집	제품, 기술, 서비스 조기 사업화를 희망하는 G밸리 소재 기업	10개 기업, 30,000천원	02-6283-1004

		2020년도 도시형소공인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소공인 당 평균 사업비 25,000천원 지원	02-2222-3886
		2020년 예술로 행복한 중소기업 프로젝트 지원사업 운영기업	서울 소재 문화예술을 업으로 영위하는 기업/협·단체 및 개인	총 800백만원(법인/협·단체 30백만원 이내, 개인 10백만원 이내)	02-2222-4286
		SETEC 신규전시회	2021년도 개최 예정 전시회 중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시회 -SETEC개최이력이없는전시회 -개최3년미만의전시회(2020.1기준)또는신규기획전시회	2021년도 전시장 대관 확보 및 대관료 50% 감면	02-2187-4611
		서울메이드 굿즈 상품개발 프로젝트 모집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 연구소, 연락사무소 등 보유한 중소기업	총1억원 / 기업당 1천만원	02-2222-3771
		서울메이드 기획상품(콜라보형/PB형) 개발을 위한 협업기업 모집	서울시 소재의 사업장, 연구소, 연락사무소 등 보유한 기업으로 기업 규모 제한 없음	총 5억원 / 기업당 5천만원	02-2222-3771
		2020년 SBA와 함께 협력하여 홍보마케팅 추진 가능한 협력사 상시 모집	자사 홍보 툴을 보유하고 있거나, 주요 언론사 및 방송사 등 미디어 업계로 광고대행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SBA 사업공모전, 행사, 사업성과 보도자료, 지원기업 등 홍보소스 제공, SBA 주요행사 등 현장 촬영 기회 제공, 모집분야별 별도의 기획형 콘텐츠 제작 및 마케팅 활동 등	02-2222-3731
서울시 지원사업	서울시청	청년 창작자 성장지원 사업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기업	엑셀러레이팅(300,000천원), 스타트업(100,000천원), 재도전(80,000천원)	02-2133-6593
		2020년도 공유기업·단체 (재)지정 및 지원사업	공유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업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02-2133-7994
		2020년 시민실천 에너지절약 공모사업 공고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사업당 최대 50백만원	02-2133-3586
		2020 지속가능한 도시전환랩 실험 프로젝트 공모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경제기업, 협동조합, 산학협력단, 소셜벤처 등	선행 연구 최대 20백만원, 실험 실행 최대 80백만원	02-2133-7986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	코로나 19 피해기업 특별 자금지원 등	융자규모 총 150억, 사회적경제기업 및 사회투자프로젝트 융자	02-2133-5477
		2020년 시민실천 에너지절약 공모사업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있는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 협동조합	총400백만원(사업별 최대 50백만원 이내)	02-2133-3586

		2020년 서울시 미래유산 민간단체 공모사업	서울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를 두고 '서울시 미래유산 보전·활용 사업'이 가능한 법인·단체	지원 한도액은 사업별 20백만원 이내	02-2133-2548
		2020년 세대균형 프로젝트	대표자가 청년(만19~39세)인 서울시 소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14개 단체 내외 (컨소시엄 가능)	총 700백만원, 30백만원-100백만원 차등 지원	02-2133-6578
		시민참여 프로그램 지원사업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내용을 운영하거나 하고자하는 기관·법인·단체 (서울시 또는 정부등록단체)	기관별 300만원 이내	070-7711-3561
		2020년 청년 직업실험 지원사업 〈청년업〉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 개인 및 단체 만 19세 ~ 39세	500 ~ 1,000만 원 / 32인(단체) 내외	02-6238-6913
서울시 지원사업	서울시청	청년 느린학습자 자립지원 프로젝트	서울시 거주 청년(만 15세-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느린학습자(만 15세~만 39세) 40명을 모집하여 적성검사 및 교육을 실시하고, 이들을 기업과 연계하여 실무인턴으로 근무시킨 후 정규직 채용 권고(연계)	02-2133-5457
	서울시청 (소상공인정책담당관)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2020년 2월 29일(코로나 심각단계 전환 시점의 월 기준) 기준 만 6개월 업력 보유 -연매출 2억 이하	70만원씩 2회 지급 신청기간:5월~6월	120
외부 지원사업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지원	2020 예술분야 기업 및 사회적경제 조직 성장 단계별 지원사업 모집 공고	창업과정 전반, 사업기반 구축, 사업도약 분류 지원	02-708-2291
	행복나래	행복나래 상품경쟁력 강화 지원	업력3년 이상의 제조업분야 사회적경제기업	5,000천원~30,000천원* 20% 기업 자부담	02-2621-4806
	특허청	지식재산정책지원사업 우선 선정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우선 선정	1544-8080
	금융위중소금융과	카드 무이자할부 등	매출 5억원 이하 가맹점	이자 할부, 결제대금, 청구유예, 금리인하 등	02-2100-2983

코로나19 관련 금융사업 부문(2020.04.29.)

주관(출처)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시중은행 및 2금융권 등	대출만기연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시기까지 만기 연장(부실이 없는 기업)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 만기연장 -대구, 경북 지역 은행권의 대출만기 연장(비대면 심사 적극 활용)	
	신규자금 공급	중소기업 소상공인	-기존 은행대출 1~1.5%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 이용 가능	
	이자, 보험료 납입 유예	중소기업 소상공인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부 은행 이자납입 유예 가능	
	농협은행 등 12개 시중은행 지원프로그램	-	-대출, 수출입, 컨설팅 지원 -각 은행 지원내용 참조	

코로나19 관련 인건비 지원사업 부문(2020.04.29.)

주관(출처)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고용노동부	무급휴직고용유지지원금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법령상 무급휴업·휴직요건을 갖춘 뒤 신고	일반절차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즉시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월 50만원)**	1350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또는 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팀)에서 신청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고용보험의 혜택을 못 받는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특별고용업종,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는 소득이나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했음을 입증하고 무급휴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50인 미만 기업 소속으로, 일정 기간 이상 무급휴직 한 것이 증빙되어야 함	*긴급고용안정지원신청전용홈페이지 구축중(6월부터 신청가능) *가까운고용센터로 연계하여 서비스제공예정

<table>
<tr><td></td><td></td><td>*세부지원요건확인필</td><td>1인당 150만 원, 1차 100만 원, 2차 50만 원으로 분할 지급예정
(1차는 예비비로 지급하고 2차는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지급)
신청기간 :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까지</td><td></td></tr>
<tr><td></td><td>서울시 코로나19 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 특별지원금</td><td>①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②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
③고용보험미가입자
④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노동자 또는 프리랜서 노동자 (*입증서류필요)
⑤(a)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b) 이전 대비 월평균소득30% 이상 감소</td><td>①~⑤전체 요건을 갖춘자 대상으로 고용보험미가입된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노동자에게 가구당 50만원의 특별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

이메일 접수 및 방문 접수 :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일자리 관련부서</td><td>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및 문의처 확인(별첨서류)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2
2133-9504
2133-9505
소상공인정책담당관
2133-5559</td></tr>
<tr><td></td><td>휴업·휴직 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td><td>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단, 재정지원 받고 있는 사업주 제외)</td><td>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4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3개월동안 휴업,휴직하는 사업장이라면 업종에 관계없이 “누구나”신청(최대90%지원)
<table><tr><td>특별고용지원업종</td><td rowspan="2">휴직·휴업 수당의 90%</td></tr><tr><td>우선지원대상기업</td></tr><tr><td>대규모기업</td><td>휴직·휴업 수당의 67%
*2/3수준</td></tr></table>
1)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조선업
+항공지상조업, 면세점업,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추가
2)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 제조업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업, 사회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보건업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금융보험업, 예술스포츠업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td><td>1350</td></tr>
</table>

<table>
<tr><td></td><td></td><td></td><td>사업장 관할 고용복지+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휴업·휴직 실시하고
✔지원들에게 먼저 수당을 지급한 뒤
✔지원금신청서를 접수</td><td></td></tr>
<tr><td>3공단(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및 고용센터 방문</td><td>30인 미만 사업장
일자리안정자금</td><td>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분만 적용되며
4월 6일(월)부터 지급</td><td>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라면 신청가능
*5월까지는영세사업장추가지원
<table><tr><td>공동주택 경비,청소원 등 고용사업주</td><td>30인 이상</td></tr><tr><td>만 55세 이상 고령자 고용사업장</td><td>300인 미만</td></tr><tr><td>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사업장</td><td>300인 미만</td></tr><tr><td>취약계층 노동자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기관</td><td>기업 규모 상관없음</td></tr></table>최대 수령 가능 금액
5인 미만 사업장 18만원
5~9인 사업장 16만원
10인 이상 사업장 13만원</td><td>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내
일자리안정지원
신청</td></tr>
<tr><td>고용노동부</td><td>자녀돌봄 근로단축
워라밸일자리 장려금</td><td>✔근속기간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긴급 자녀돌봄 등을 하도록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법에 의한 근태관리를 실시한 기업 대상

3월 1일(일)~6월 30일(화)까지 신청</td><td>* 근로자 1인당 20만원 인상, 월 40만원을 지급

중소·중견기업에게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간접노무비를 지원
※중견기업은 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모든 기업, 소정근로 시간에 따라 월 최대 60만원지원
<table><tr><td>주 15~25시간 근무</td><td>월 최대 60만원</td></tr><tr><td>주 25~35시간 근무</td><td>월 최대 40만원</td></tr><tr><td>임신근로자 35시간 이하 근무</td><td>월 최대 40만원</td></tr></table></td><td>단축근무 실시했다는 증빙 서류와 함께

고용센터에 팩스·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고용안정장려금]로 들어가 통합장려금(2017)를 클릭,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신청서작성</td></tr>
</table>

<table>
<tr><td></td><td></td><td>*3월 1일 이전에 단축한 경우 인상된 장려금을 소급하여 지원
기간중에 단축을 시행한 경우 단축 개시일로부터 4개월간 인상된 지원금 적용</td><td>모든기업, 대체인력지원금 월 최대80만원지원
단축한 시간만큼 대체인력 채용 시 대체인력 인건비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음
<table><tr><td>우선지원대상기업</td><td>월 최대 80만원</td></tr><tr><td>그 외 기업</td><td>월 최대 30만원</td></tr></table>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 제조업: 500명 이하
- 광업·건설업·운수업·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00명 이하
- 도매 및 소매업·숙박 및 음식점업·금융 및 보험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00명 이하
-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td><td></td></tr>
<tr><td></td><td rowspan="2">소상공인·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지원</td><td>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한 국민연금 가입자</td><td>① <국민연금> 3개월 납부예외
(납부예외 신청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만큼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산입되지 않음)

*적용 기간: ‘20년 3월~6월분 보험료 중 최대 3개월
*신청 기간: 매월분 익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단, 신청 기간 이후 소급 납부예외 신청은 불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을 통해 제출
기존 납부예외 대상이었던 휴직·실직 외에 소득이 감소한 사업장도 추가로 인정, 소득 감소 증빙서류는 근로자 동의서와 급여명세서로 최대한 간소화합니다.

*제출서류
신청서, 소득 감소 입증 서류, 납부예외 관련 근로자 확인서 등</td><td>1355</td></tr>
<tr><td></td><td>✔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대</td><td>② <산재보험료> 6개월 30% 감면+3개월 납부기한 연장
3개월간 납부 기한을 연장해주고 6개월간 보험료의 30%를 감면
<table><tr><td></td><td>부과고지 기간</td><td>지원 내용</td></tr></table></td><td>1577-1000</td></tr>
</table>

<table>
<tr><td rowspan="2"></td><td rowspan="2"></td><td>상 사업장
✔1인 자영업자라면</td><td><table><tr><td>납부유예</td><td>‘20년 3월~5월분 보험료</td><td>5.11(월)까지 신청시 납부기한 3개월 연장</td></tr><tr><td>보험료감면</td><td>‘20년 3월~8월분 보험료</td><td>6개월 간 30% 감면</td></tr></table>
사회보험 통합징수포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국민건강보험에 우편 등을 통해 납부유예 신청
*보험료 감면은 해당자에 자동 적용되어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산재보험료 감면대상 여부 확인
https://www.kcomwel.or.kr/kcomwel/info/cont/cor19.jsp</td><td></td></tr>
<tr><td>해당자 자동적용, 별도신청절차 없음</td><td>③ <건강보험료> 3개월 최대 50% 감면
20년 3월~5월분 건강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감면
이미 고지된 3월분은 4월 보험료에 소급 정산하여 반영
*기존에 다른 경감 받고 있어도 중복 적용 가능
*4~5월 소득 감소 등으로 도중에 대상으로 선정되면 해당 월의 보험료 감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해당 월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 일괄 감면(대상자 여부 미리 알 수 있도록 안내문 발송)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이라면 부과된 보험료의 50%를 감면(대구,경북,경산,봉화,청도)
그밖의 지역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사업장은 부과된 보험료의 50%를, 건강보험료 하위 20% 초과 40% 이하는 30%를 감면</td><td>1577-1000</td></tr>
<tr><td>고용노동부</td><td></td><td>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td><td>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td><td>1350</td></tr>
<tr><td>고용노동부</td><td>코로나19로 인한 휴업시 지원금</td><td>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 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td><td>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td><td>1350</td></tr>
<tr><td>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td><td></td><td>코로나19로 인해 입원, 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td><td>코로나19로 입원, 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td><td>주민센터 129</td></tr>
</table>

코로나19 관련 세제혜택(기타) 부문(2020.04.29.)

구분	주관	지원대상 및 내용	연락처	신청절차
국세	국세청 징세과 관할 세무서	▪ (대상) 신종 코로나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관광업, 여행업, 공연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1)확진환자·격리중인자(업종무관) 2)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3)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4)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내용) ①법인세(3월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예정신고)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징수유예(최대 9개월),체납처분집행유예(최장 1년) ③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신종 코로나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번없이 126 (3번→2번)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 및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온라인 신청 로그인->신청/제출->일반세무서류신청->민원명 찾기에서 '기한연장'또는 '징수유예'또는 '체납처분유예'조회->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조사연기·중지신청: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는 「세무조사 연기신청서」를,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에 「세무조사 중지 신청서」를 담당 조사팀에 작성·제출해야 연기 또는 중지됨
지방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대상) 신종 코로나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관할 지자체 세정과 문의	관할 지자체별 신청접수
관세	관세청 심사정책과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042- 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확인필요
카드	금융위 중소금융과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02-2100-2983	전화문의

코로나19 관련 개발비 및 지원사업 부문(2020.04.29.)

주관(출처)	프로그램명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피해 중소기업 긴급 운영자금 국비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가치삽시다 플랫폼 판매수수료 할인(5->2.5)	프랜차이즈가맹점		
중소벤처기업부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제도	중소기업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지원	코로나19 관련 피해중소기업(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제조 중소기업) 중 매출액 10% 이상 감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실시적 경영 애로 해소와 경영 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중앙정부 및 지자체등 정부소유재산의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대폭인하(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상 소상공인대상)	자동차부품	-중앙정부 : 임대요율을 재산가액의 3->1% 인하(2천만원 내) -국가위탁개발재산-임대료50%감면(2천만원) -지자체-임대요율을재산가액의5->최저1%인하	
(고용부보도자료)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점포재개장 : 제출서류간소화 비용지원	세종시	-점포 재개장 : 최대300만원, 18.9만개소	경영회복문의 : 각지자체
(고용부보도자료)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사업정리지원 :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지원	울산/포항/경주시	-특별재난지역 (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예정사업장의 사업정리컨설팅, 점포철거비지원(최대200만원, 1.9만개소)	1357
(고용부보도자료) 특별고용지원업종지정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소상공인 원스톱 지원체계구축	경기도	-채무종결 후 교육, 컨설팅, 재창업자금 보증 등 지원	고용노동부 044-202-7413
(관계부처합동) 코로나19 극복 종합대책	소상공인의 광고 판촉비 인하, 불가피한 영업중단 소해 경감시, 기업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경남도		
상동	수출바우처(최대 8천만원) 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포함 자영업자		
상동	온라인 전시관 입점지원(2억)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상동	자동차업계 퇴직인력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	코로나 19 피해기업		
상동	수입부품 국내 대체를 위한 단기 r&d지원	매출액 15% 감소, 확진자 동선포함 등		
상동	스마트공장 및 제조기술 고부가가치화 R&D지원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피해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시작 (지역산업고용정책과)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 지원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 등) 중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에서 규정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근로시간의 20% 이상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사업주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 정책과 044-300-481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 통신정책관	통신방송분야 소상공인긴급지원	확진자로 인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통신요금 1개월 감면(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선정) -방송요금 1개월 감면(각 유료방송사가 자율적으로 1개월 이상)	044-202-66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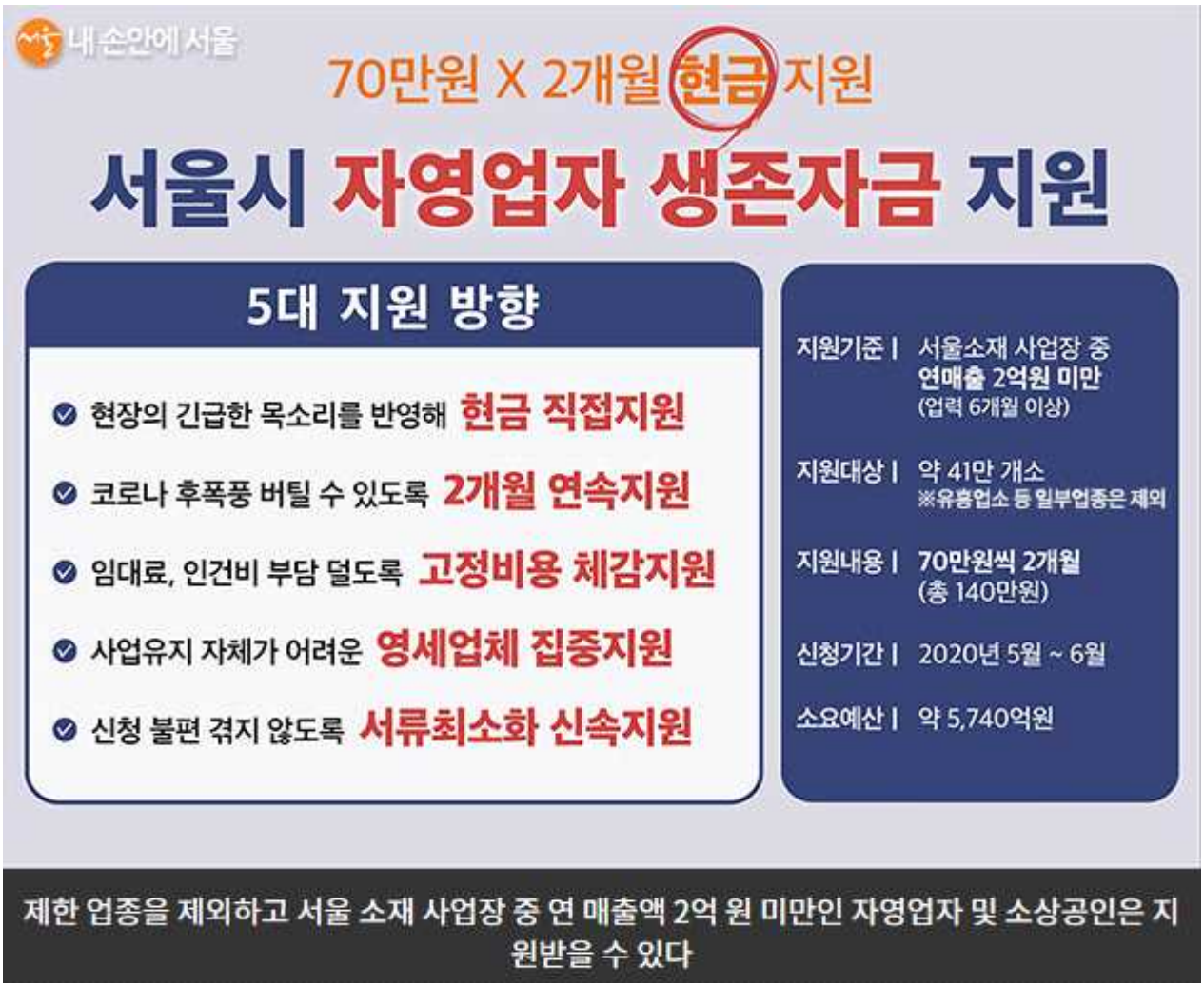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회적경제기업 지원대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04.28.)

분야	구분	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경영 및 고용지원	사회적기업지원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①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 월 지원금 선지급 허용 ②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 일시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행정처분 면제 ③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에 추가지원 ④코로나19로 휴업할 경우 지원금 지원 가능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사업주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 종사자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3.19~9.15 기업규모 무관 지정, 지원금수준 상향(90%) 등 지원강화	044-202-7406 044-202-7413
		고용유지조치(휴업, 휴직)를 실시한 사업주	코로나19 피해기업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단,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1350
		3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코로나19 영세사업장 인건비 지원) * 영세사업장 추가 지원(~5월)	1350
		유연근무제 활용 제도 마련 및 출퇴근 관리한 기업	유연근무제 활용기업 고용안정장려금 지원	1350
		소정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단축을 허용한 사업주	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워라밸일자리 장려금)	1350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코로나19 피해 유급휴가비용 지원	1355 또는 129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사업정리, 재기지원 -(경영회복) 점포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폐업지원) 사업정리 컨설팅 및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백만원)	1357
	근로자 지원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휴업,휴직,휴가 및 모성보호 관련 피해를 입은 근로자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운영(4.6~6.30)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및 가족돌봄휴가,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다툼에 대해 근로자가 피해사실 신고 및 권리구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무급휴직 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대상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4월~)	1350
		코로나19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해고에 대한 실업급여 지원	1350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업,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코로나19로 인한 일시 영업중단에 대한 휴업수당 지원	1350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된 자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코로나19 입원/격리로 인해 소득공백 발생 근로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129 읍면동 주민센터
		업무상 코로나19 감염발생자	업무상 코로나19 감염 시 산재보상 지원	1588-0075 근로복지공단
		저소득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대폭 확대 및 요건 완화	1588-0075 근로복지공단
		만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가 긴급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가족이 확진자 등일 경우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긴급돌봄휴가(연간 최대 10일) 사용 근로자 대상 1인당 일 5만원 지원	1350
		아동수당(만 7세 미만 아동) 수급 대상자	코로나19 관련 특별돌봄쿠폰 지원	읍면동
금융지원	대출	소상공인·자영업자 ㅇ 4-10등급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ㅇ 4-6등급 연매출 5억이하 소상공인 ㅇ 1-3등급	소상공인·자영업자 긴급경영자금 초저금리(1.5%수준) 대출 : 12.0조원 *신용등급 사전 조회 가능 ㅇ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시 무료 ㅇ나이스평가정보(www.credit.co.kr) (단, 대출 가능 여부는 최종 은행 결정) ※ 각 지원프로그램의 지원대상, 한도/금리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좌측 '자세히보기(금융위원회)' 버튼 클릭 또는 우측 지원주체의 연락처 등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042-363-7130 소상공인공단 1588-2588 기업은행 시중은행 (4/1부터)
		중소·중견기업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산업은행 1588-1500
		중소·중견기업	산은 중소·중견기업 대출 프로그램 : 5.0조원	기업은행 1588-2588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대출 프로그램 : 6.2조원	수출입은행 02-3779-6114
	보증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 5.5조원 * 일반 보증비율보다 보증료율 ↓ , 보증비율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소상공인	긴급자금 전액보증(4월-9월 한시운영) : 3.0조원 * 연매출 1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 피해업종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지역신용보증재단 1588-7365
		중소기업	신보 중소기업 보증 프로그램 : 5.4조원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수은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보증 프로그램 : 2.5조원	수출입은행 02)3779-6114 · 6253
	중장기채	중소기업 중견기업(대기업)	코로나 피해대응 회사채 발행지원(P-CBO) : 6.7조원	산업은행 1588-1500, 02)787-5612·5615 신용보증기금 1588-6565
		중견기업(대기업)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시행 : 2.2조원	
		중견기업(대기업)	산업은행의 회사채 차환발행 지원 : 1.9조원	
		채권시장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 20조원	
세제지원	국세	피해 납세자 (자영업자 등)	피해자 대상 국세 납부 연장 등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126
	지방세	확진자·격리자,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피해자 대상 지방세 납부 연장 등	관세청 125
	관세	중국내 공장폐쇄로 수출 어려움을 겪는 업체	납기연장분할납부, 당일 관세 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등	방문신청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지원	생활비	위기사유에 해당되고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한 가구	긴급복지지원제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산기준) 대도시 18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129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1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5월 중순 공식적인 접수 및 신청절차 발표예정

2 서울시 특수고용 · 프리랜서 특별지원금



지원 요건

대상

1.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20년 3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으로 확인)
2.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인 시민**(공고일 '20.5.4. 현재)
3. **고용보험 미가입자**(공고일 '20.5.4. 현재)
4.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또는 **프리랜서노동자** ※입증서류 제출
5. (a) 코로나 위기경보 '심각'단계 발령('20.2.23.) 이후 **20일 이상 노무 미제공**
   또는 (b) **이전 대비 월평균소득 30%이상 감소** ※입증서류 제출

1 ~ 5 모든 항목에 속해야함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란?

소비자에게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고 있으며,
일의 형태는 임금노동자와 유사하나 형식상으로는 개인사업자인 노동자, 고용보험미가입자

예시

- 교육 방과 후 교사, 학습지 방문강사, 학원강사, 연수기관강사,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등
- 여가 연극·영화 등 공연분야종사원, 관광서비스종사원(가이드, 운전 등), 골프장캐디 등
- 운송 대리운전기사, 택배/퀵서비스기사, 배달원, 공항·항만하역종사자 등
- 기타 보험설계사, 대출/신용카드모집인, 통·번역사 등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 (최대 1명, 1회)

중복 가능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동주민센터에서 접수중)

중복 불가 실업급여,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청년프리랜서 신속지원사업수급자

★ 중복신청시 양쪽 지원금을 모두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급방식 현금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

※ 본인계좌가 압류 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가족명의 통장사본 제출

참고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하되,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하여 판단함.
4인 가족(160,546원)의 경우 161,000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서울시가 적용하는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중위소득기준 (금융, 자동차 등 재산반영)	(서울시적용)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혼합 (직장+지역)
1인	1,757,000	101,000	86,000	101,000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소득감소 30% 이상

▸ 2020년 3월~4월 평균소득을 1월~2월 평균소득 또는 2019년 월평균소득과 비교

(A)	(B) ㉡ 또는 ㉢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 $\frac{(B-A)}{B}$
㉠ '20.3~4월 월 평균소득	㉡ '20.1~2월 월 평균소득	㉢ '19년 소득/12(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이메일 **5월 6일(수) ~ 5월 22일(금)** 17시 도착분에 한함

방문 **5월 11일(월) ~ 5월 22일(금)** 9시~17시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포함돼 있는 이메일로 신청**

nodong16@ | nodong27@ | nodong38@ | nodong49@ | nodong50@seoul.go.kr

방문 **신청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 일자리 관련 부서**

필독!! 이메일 접수방법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가 포함돼 있는 이메일로 신청

이메일주소	nodong16@	nodong27@	nodong38@	nodong49@	nodong50@
출생년도 끝자리	1 또는 6년	2 또는 7년	3 또는 8년	4 또는 9년	5 또는 0년

- 195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19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 1971년생은 nodong16@seoul.go.kr
- 1990년생은 nodong50@seoul.go.kr 으로 신청

서울시 공고 제2020-000호

서울시 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 공고

코로나19로 인해 휴업·휴관 등으로 생계위기에 직면하고,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특고·프리랜서에게 특별지원비를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을 위한「코로나19 특고·프리랜서 특별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5. 4.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험 사각지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 및 프리랜서 등을 대상으로 특별지원비 지원

2. 신청기간

○ **(전자우편)** 2020. 5. 6.(수) ~ 2020. 5. 22.(금) 17:00 까지

○ **(방 문)** 2020. 5. 11.(월) ~ 2020. 5. 22.(금), 평일 09:00 ~ 17:00

3. 지원요건

○ **(지원대상)** 공고일('20. 5. 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 **(자격기준)** 신청일 전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①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또는 ② '20. 3~4월 평균소득이 '20. 1~2월 평균소득 또는 '19. 1~12월 평균소득 대비 **30%이상 감소한 자**

(※ ①, ②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하고, 입증 가능한 기준 선택)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20.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 확인

* 가구원수에 따라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 확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단위 : 원>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1,757,000	-	-	-
2인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인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인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5인	5,628,000	190,000	196,000	193,000
6인	6,506,000	221,000	234,000	225,000

* 1인 가구 본인부담금 금액은 보건복지부 공식 발표금액이 없어 2인 가구 금액 적용 예정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한가구에 동시에 있는 경우

※ 보건복지부 기준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발표금액에서 천원미만은 천원단위로 절상
(예시) 4인가구 지역가입자 보험료 160,865 -> 161,000원)

○ **(제외대상자)** ① 공고일(’20. 5. 4.)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②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부터 공고일(’20. 5. 4.)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특고·프리랜서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1인 자영업자에 해당하여 신청인과 사업장 대표자가 동일인 경우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여 특고·프리랜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

4. 지원내용

○ **(지원금액)** 가구당 50만원(1회 지급)

○ 신청금액이 예산 초과 시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 순으로 지급

5.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지급

* 본인계좌 압류중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제출

6.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 **(방　　문)** 신청인 주소지 관할 자치구 일자리관련 부서 방문접수
(※ 위치 및 문의처 : [붙임 1] 참고)

○ **(전자우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전자우편 접수

출생연도 끝자리	전자우편 주소
1, 6	nodong16@seoul.go.kr
2, 7	nodong27@seoul.go.kr
3, 8	nodong38@seoul.go.kr
4, 9	nodong49@seoul.go.kr
5, 0	nodong50@seoul.go.kr

7. 제출서류 (※ [붙임 2] 참고)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서류명</th><th>발급처</th><th>용도</th></tr>
<tr><td>1</td><td colspan="2">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td><td>서식1</td><td rowspan="8">지원요건 확인</td></tr>
<tr><td>2</td><td colspan="2">특고·프리랜서임 자격 확인 서류</td><td>자유서식</td></tr>
<tr><td rowspan="2">3</td><td rowspan="2">택일</td><td>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자유서식)</td><td>서식2</td></tr>
<tr><td>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td><td>서식3</td></tr>
<tr><td>4</td><td colspan="2">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td><td rowspan="2">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td></tr>
<tr><td>5</td><td colspan="2">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td></tr>
<tr><td>6</td><td colspan="2">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td><td>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td></tr>
<tr><td>7</td><td colspan="2">주민등록등본</td><td>민원24, 주민센터</td><td>가구원수 확인</td></tr>
<tr><td>8</td><td colspan="2">개인정보처리동의서</td><td>서식4</td><td>개인정보 취급</td></tr>
<tr><td>9</td><td colspan="2">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td><td>서식5</td><td>부정수급 방지</td></tr>
<tr><td>10</td><td colspan="2">통장사본</td><td>-</td><td>지원비 지급</td></tr>
</table>

[붙임] 1.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위치 및 문의처)
2. 제출서류(서식1~서식5)

※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02-2133-5412)

[붙임1] 자치구별 현장접수처 및 문의처

○ 자치구 전화는 현장접수일인 '20.5.11(월)부터 가능합니다.

연번	자치구	접수처	주소	전화번호
1	종로구	구청 본관 지하 1층 지하합동상황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43	02-2148-2290
2	중구	구청 지하1층 합동상황실	서울시 중구 창경궁로 17	02-3396-8140
3	용산구	5층 용산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용산구 녹사평대로150	02-2199-6770
4	성동구	1층 행복민원실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02-2286-6901
5	광진구	안전관리동 지하 1층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117	02-450-1363~64
6	동대문구	6층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02-2127-4205
7	중랑구	구청1층 민원여권과 내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	02-2094-2245
8	성북구	4층 휴게공간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02-2241-4882 02-2241-4883
9	강북구	1층 일자리 플러스센터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89길 13	02-901-7245~46
10	도봉구	지하1층 체육관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56	02-2091-5991
11	노원구	본관 3층 일자리경제과	서울시 노원구 노해로437	02-2116-2341
12	은평구	구의회 2층 소회의실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195	02-351-6830
13	서대문구	6층 민주평통자문회의실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248	02-330-6744
14	마포구	10층 일자리지원과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	02-3153-8695
15	양천구	해누리타운(4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	02-2620-4638
16	강서구	탐라영재관 4층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강서구 양천로57길 10-10	02-2600-1211~12
17	구로구	구청본관 지하1층 혁신사랑방	서울시 구로구 가마산로 245	02-860-2062
18	금천구	구청 옆 금나래주안공원내 커뮤니터센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73길 70	02-2627-2015
19	영등포구	구청 옆 우리은행 2층 영등포구 일자리플러스센터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123	02-2670-1671
20	동작구	일자리플러스센터 2층(동작구청 주차장 내)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02-820-1059
21	관악구	지하1층 일자리카페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45	02-879-5777
22	서초구	구청별관(양재역 환승센터) 5층 일자리과 사무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02-2155-8764
23	강남구	1층 일자리지원센터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6	02-3423-6750
24	송파구	본관 2층 무료상담실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	02-2147-4930
25	강동구	오복빌딩 6층 노동권익센터	서울시 강동구 올림픽로 658	02-3425-9402~03

보다 나은 정부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2020. 3. 16.(월) 석간,
<인터넷 2020. 3. 16.(월) 11:00 이후>
✍총 6쪽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404)
서기관 조형근 (044-202-7406)
사무관 윤주희 (044-202-741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제정

■ **3.16.~9.15.까지 6개월 간, 기업 규모에 상관 없이 지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75→90%) 등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 강화**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3월 16일자**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 고시 제정에 따라 올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 간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4개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등 **지원이 강화**된다.

○ 이번 **고시 제정**은 지난 3월 9일 개최된 **고용정책심의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피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임을 고려해서 **통상적인 고시 제정 절차보다 빠르게 진행**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세부 업종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를 통해 확인된다.

○ **「관광진흥법」 등의 개별법**에서 정한 **면허증·신고증·등록증** 등을 가진 업체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 이번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세부 업종**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N752)이나 **「관광진흥법」** 상의 **여행업**으로 **등록**한 업체

②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호텔업**(55101) 및 **휴양콘도 운영업**(55103)이거나 **「관광진흥법」** 상 **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호스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등의 관광숙박업으로 **등록**한 업체

③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업**(49232), **외항 여객 운송업**(50111), **내항 여객 운송업**(50121), **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50201), **항만 내 여객 운송업**(50202) 및 **항공 여객 운송업**(51100)이거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 업체, ⓑ**「해운법」**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업체,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항공사업법」**에 따라 **국내·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

④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R901) 이거나 **「공연법」**에 따라 공연장 시설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사업장 규모 및 대상자 수 〉

□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되면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대형 호텔, 항공사, 여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진다.

○ 올해 **1월 말 고용보험DB**에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4개 업종의 사업장과 근로자 수**는 **13,845개소, 171,476명**으로 추산된다.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 업종: 5,599개소, 111,569명 (2020년 1월 기준)

○ **고용보험DB 상 지정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관광진흥법」 등 개별법에 따른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많은 사업장**과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예: 업종코드는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 정한 여행업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

□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 내용**이 **크게 강화**된다.

1 먼저,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 등에 대한 지원 수준이 높아진다.

○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66%***에서 **90%까지**로, **1일 한도**는 **6만 6천원**에서 **7만원**으로 높아지고

* **2020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으로 **75%** 지원

- **무급휴직 지원금 지원요건**이 ▲무급휴직 실시 **90일**에서 **30일**로,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된다.

○ 아울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장애인 의무고용부담금**의 **납부기한**이 **6개월간 연장**되고, **체납처분 집행이 유예**된다.

- **건강보험**의 경우 지정기간 동안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고,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 또한,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 **훈련비 지원단가**가 **상향***되고 **지원한도**도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상향**(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된다.**

*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12조 별표 2에 따른 단가의) 100%→150%, ▲**1,000인 미만 기업**: 60%→100%, ▲**1,000인 이상 기업**: 40%→90%

2 근로자 및 구직자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 등이 강화된다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가 **확대**되고,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 한도**는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자녀학자금 융자 한도**는 **연 5백만원**에서 **연 7백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상환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8년****으로 연장된다.

* 거치 1년, 상환 3~4년　　** 거치 1~3년, 상환 3~5년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융자를 위한 소득요건**은 **월 181만원**에서 **월 222만원**으로, **다른 생계비**는 **월 259만원**에서 **월 317만원**으로 **완화**된다.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올해 3월 9일부터 7월 31일**까지는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더 완화된 **월 388만원**으로 적용된다.

○ **직업훈련 생계비 융자 한도**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확대**되며, **체당금 조력대상 사업장**은 **상시 10명 미만**에서 **30명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아울러, **국민내일배움카드**의 **자부담률**이 **최대 55%**에서 **20%**로 **완화**되고, **훈련비 한도**도 5년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높아진다.

○ 또한, 지정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에서 지원기간 중 이직한 후 **실업상태에 있는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Ⅱ**에 **참여**할 때 **소득요건**이 **면제**된다.

□ 이재갑 장관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피해**를 받은 업종들이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만큼 기업들이 **제도를 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라고 하면서,

○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외에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신설 등 다양한 지원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OPEN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지역산업고용정책과 조형근 서기관(☎ 044-202-7406), 윤주희 사무관(☎ 044-202-74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 인포그래픽**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주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유급 휴업·휴직) 지원 강화

지원수준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

2/3 ('20.2.1~7.31 한시적으로 3/4 지원) → 90%

* 대규모기업 1/2~2/3 ⇒ 2/3~3/4

지원한도 인상 (우선지원대상기업)

6.6만원/1일 → 7만원/1일

* 대규모기업 6.6만원

사업주 훈련지원 확대

지원한도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

납부보험료의 240% → 300%

* 대규모기업: 100% ⇒ 130%

지원단가 상향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단가의 100% → 150%

* 1,000인 미만 60% ⇒ 100%, 1,000인 이상 40% ⇒ 90%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건강보험료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유예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 과태료

3만원/1명 면 제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확대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포함



특별고용지원 업종 근로자 지원
이렇게 바뀝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상환기간 연장	소득요건* 완화	학자금 융자 확대
최대 5년 → **최대 8년**	임금감소·소액생계비 (만원): 월181 → **월222** 그 외 (만원): 월259 → **월317**	고교생 연 5백만원 → **고교, 대학생 연 7백만원**

* 코로나19 대책에 따라 한시적('20.3.9~7.31)으로 모든 융자 소득요건을 월 388만원으로 완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 증액
1천만원 → **2천만원**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대상 확대
상시 1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퇴직 근로자**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강화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취업성공패키지 II 참여 요건 완화

중위소득 100% 이하 → **소득요건 면제**

훈련연장 급여 지급 요건 완화

기술자격증 소유 등 4개 요건 충족 → **직업훈련을 받으면 재취업**하기 쉽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다 나은 정부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2020. 3. 31(화) 조간

인터넷 2020. 3. 30.(월) 14:15

✍총 7쪽

❖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담당관실**

과 장 이민재 (044-202-7026)

서기관 노경민 (044-202-7027)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404)

서기관 이창주 (044-202-7419)

사무관 김진영 (044-202-7405)

고용지원실업급여과

과 장 윤영귀 (044-202-7368)

사무관 이지수 (044-202-7375)

공정채용기반과

과 장 배영일 (044-202-7432)

사무관 전윤아 (044-202-7493)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과 장 설예승 (044-202-3051)

사무관 최종천 (044-202-3054)

노인지원과

과 장 박기준 (044-202-3470)

사무관 박소영 (044-202-3477)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

과 장 박은주 (042-481-4534)

사무관 송성동 (042-481-458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마련

▲ 무급휴직자: 자치단체별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
▲ 특고 ·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3개월) 지원
▲ 긴급복지지원(평균 월 65만원), 무급휴직자 및 특고 · 프리랜서 등도 지급

□ 정부는 **3.30(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였다.

○ 정부는 **고용보험을 활용**하여 고용안정이 필요한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고, **구직자**에게는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한편,

- **저소득층, 청년** 등을 대상으로 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통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구직자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 `20년 추경을 통해 지원인원 5만명(14만명→19만명) 추가

○ 그러나, 기존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건설일용근로자, 구직 중인 청년** 등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 대응과 생계유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을 위한 추가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무급휴업·휴직] 긴급 생활안정 지원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 / '긴급복지지원' 평균 월 65만원(1개월+α)**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무급휴직자**(10만명) 대상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약 800억원을 무급휴직자 지원에 배정

↳ 특별재난지역에 전체 예산(2천억원)의 35%(대구 370억, 경북 330억)를 지원하고, 나머지 15개 지자체에 30~150억(차등배정) 지원

○ **긴급복지지원*** 대상을 코로나19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이 큰 **무급휴업·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 확대하여 **가구원수를 기준*****으로(월 평균 65만원) 지원(4.6.~).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로서 재산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1개월 우선 지원 후, 지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6개월까지 지원기간 연장 가능

*** 1인가구 45.5만원, 2인가구 77.5만원, 4인가구 123만원

❷ [특고·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지원요건 완화 등

↳ '구직촉진수당' 1.6만명, 월 50만원(3개월)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10만명, 월 50만원(2개월)

○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생계안정**를 위해 지급하는 **구직활동 지원금**(50만원, 3개월)을 일거리가 줄어든 **특고, 프리랜서** 등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구직활동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여 지급**(4.1.~)

* (현행) 타 직업으로의 전환을 상정하고 구직활동 계획수립 및 이행 점검
→ (개선) 종사 분야 전문성 향상, 안정적 수입 확보를 위한 제반 활동 등을 구직활동으로 폭넓게 인정(직업별 보수교육, 고객 확보 노력 등)

** 지난 추경 등을 통해 추가 확보된 취업성공패키지 예산 797억(14만명→19만명,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활용

○ 17개 광역지자체별로 **특고·프리랜서***(10만명) 대상 **고용 및 생활안정** 지원(월 50만원, 최장 2개월) 실시(4월~)

*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추경, 2천억) 중 1천억원(50%) 이상을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및 단기일자리에 배정

❸ [건설일용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제도 신설(4월~8월 한시)

↳ 8.7만명, 최대 2백만원 대부(무이자)

○ 코로나19 확산(발주연기, 공사중단 등)으로 인한 **건설 일용근로자*** 생계보호를 위해 1인당 **최대 2백만원 무이자 대부**(건설근로자공제회) 지원 신설(4월중순~)

* 건설일용근로자 실업급여 신규신청자 수(`20.1.1.~3.25): 62,250명

* 퇴직공제부금 적립일수 252일 이상,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피공제자

❹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 ·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

↳ 20.8만개소, 〈점포재개장〉 3백만원, 〈사업정리〉 2백만원

○ **(점포 재개장)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최대 3백만원, 18.9만개소) **신속 집행**

* 확진자 방문여부(지자체 직접 확인), 사업자등록 증명(행정정보공동이용망 활용) 등

** 지원항목: 재료비, 홍보마케팅비, 공과금·관리비, 위생・방역 비용

○ **(사업정리 지원) 특별재난지역**(8,200개소, 164억원)을 중심으로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폐업 예정 사업장의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최대 2백만원, 1.9만개소)

* 세무·노무·임대차정리·신용관리 컨설팅, 법률지원 등 전문적 상담 등 지원

○ **(재기 지원) 다중채무 신속 해소**를 위한 **패스트트랙* 도입** 및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 금융채무, 건강보험료, 세금 등 다중채무 연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국세청 등 소관 기관 간 협업으로 신속 처리절차 구축

** 채무종결(파산·면책, 신복위 채무조정 등) 후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❺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 완화(신청기준 4월~별도고지 시)

↳ 5만명, 월 50만원(6개월)

○ 청년의 **구직활동에 애로**가 없도록 **청년구직활동지원금**(월 50만원)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상호 연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4.1.~)

* (현행)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제한
→ (개선) 구직활동지원금(취성패) **지원 직후** 취성패(구직활동지원금) 참여 가능

❻ [노인] 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 추진

↳ 54.3만명, 1개월분 활동비 27만원

○ **사업 중단 권고**(중대본, 2.27) 이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공익활동 참여자*의 1개월분 **활동비 전액**(월 30시간, 27만원) 先지급**(4월초)

*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공익활동 참여자 중 희망자 대상 (동의서 작성)

참고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개요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민생경제대책(추경) | ⓪추가 대책

무급휴직근로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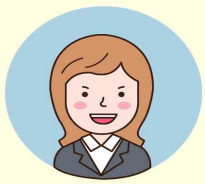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긴급복지지원제도

①무급휴직자 생계비 지원(지자체)
(800억원 우선지원) *월 최대 50만원

특고, 프리랜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구직촉진수당

③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지자체)
(1천억원 우선지원) *월 최대 50만원

④특고, 프리랜서 구직촉진수당 요건완화
*월 최대 50만원(3개월)

②무급휴직자·특고 등 긴급복지지원 *가구당 월 평균 65만원

건설일용근로자



⑤(신규) 긴급 생계비 융자 신설(+1,000억원)
*최대 200만원(무이자)
※건설공제기금 활용

소상공인



▲피해점포 지원

⑥피해점포 경영회복 및 사업정리·재기 지원
*경영회복 300만원
폐업지원 200만원

청년



⑦청년구직활동지원금 요건 완화
*월 50만원(6개월)

노인



⑧노인일자리 활동비 先지급(1,435억)
*3월 활동비(27만원)

보다 나은 정부 고용노동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2020. 4. 2.(목) 조간,
<인터넷 2020. 4. 1.(수) 12:00 이후>
✍총 8쪽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과 장 최태호 (044-202-7404)
서기관 이창주 (044-202-7419)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4월부터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 시행

- 총 2,346억원을 투입하여 26만7천명 지원
- 월 최대 50만원, 2개월 지급

<< 사업 개요 >>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영세사업장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 본 사업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별도의 **사업계획 공고** 등을 통해 **4월 초에 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에는 3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된 **2,000억원의 국비와 346억원의 지방비 등 총 2,346억원이 투입**된다.

○ 국비 2,000억원은 광역자치단체별로 **코로나19 피해상황, 재정자립도, 취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정되었다.

○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370억원과 330억원**이 배정되어 **국비의 35%**가 지원되고,

- **나머지 15개 광역자치단체**에 **30~150억원**이 배정되었다.

* 경기 150억, 서울 130억, 경남 115억, 부산 110억, 충남 105억, 인천 100억,

광주·대전·강원·충북 각 75억, 울산·전북·전남 각 70억, 제주 50억, 세종 30억

○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를 매칭**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총 346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된다.

* 서울 151억, 경기 87억, 전북 70억, 광주 15억, 충북 13억, 제주 10억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상황이 지역마다 다른 상황에서, 금번 사업계획은 지역의 일자리 사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수립**하였다.

○ **17개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무급휴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 **무급휴직자 고용안정 지원**에는 국비·지방비를 합하여 **총 934억원**이 투입되어 **약 11.8만명**이 혜택을 받고,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에는 **총 1,073억원**이 투입되어 **약 14.2만명**이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 그 외에도 자치단체별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직업훈련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는 **훈련생 지원, 사업장 방역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 업 명	수행 광역자치단체	예산(억원)	인원(만명)
무급휴직 노동자 고용안정 지원	17개	934	11.8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생활안정 지원	17개	1,073	14.2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일용직 등 단기일자리 제공	9개	337	0.6
직업훈련생 지원	4개	2.7	0.1
사업장 방역 지원	1개	0.3	-
합 계	-	2,346 (지방비 346 포함)	26.7

□ 사업별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일자**는 **자치단체별로 발표**할 예정으로 사업유형별로 사전에 자치단체에 확인하고 신청해야 한다.

<< 세부 사업 내용 >>

□ 첫째, **광역자치단체에서 무급휴직 노동자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부산, 인천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이다.

* 자치단체별로 5인·10인·50인 또는 100인 미만 사업장 기준 설정

**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 **영세 소규모 사업장**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지역 내 어려움을 겪는 업종을 우선 지원한다.

○ **사업주**가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휴직일수, 근로시간 등)를 **관할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 지원신청서 접수장소 및 방법은 자치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시 구체화해서 공지 예정

-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 만약, 사업주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노동자 개별신청도 가능**하다.

□ 둘째,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 간**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 서울, 부산, 인천, 제주의 경우 지원기간을 1개월로 줄이는 대신에 수혜자 수 확대

○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서비스가 어려워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줄어든 직종**에 종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이다.

* 자치단체에 따라 **소득기준(예: 중위소득 100%) 설정하여 저소득자 우선지원**

-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일자리가 끊기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 지급할 예정이다.

○ 신청희망자는 본인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임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 위촉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자료**와 **노무 미제공(또는 소득감소) 사실을 확인할 서류** 등과 함께 신청서를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 제출하면,

- 자치단체(또는 사업수행기관)에서는 요건 심사를 거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에게 직접 지급한다.

□ 셋째,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 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 **사업장 방역 지원인력**, 전통시장 택배 지원인력 등 지역의 수요에 따라 긴급한 부분에 **단기일자리를 제공**하고, 참여자에게는 **1인당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40시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한다.

□ 이외에도, 4개 광역자치단체(울산, 세종, 충남, 전남)에서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직업훈련이 중단되어 훈련수당을 받지 못하는 훈련생**에게 이에 준하는 **금액(월 12만원, 2개월)**을 지급하고,

○ 1개 광역자치단체(세종)에서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방역을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참고1>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
<참고2>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및 사업현황

참고 1 17개 광역자치단체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자치단체별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자치단체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자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과 *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	정여원 사무관(02-2133-5447) 엄태근 주무관(02-2133-5455)
	노동정책담당관 * 특고·프리랜서 지원	김경미 사무관(02-2133-5412)
부산광역시	일자리창업과	문정주 팀장(051-888-4373) 이재환 주무관(051-888-4372)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최성우 팀장(053-803-3700) 안미숙 주무관(053-803-3703)
인천광역시	일자리경제과	변영환 사무관(032-440-4231) 박혜란 주무관(032-440-4232)
광주광역시	일자리정책관	이보근 사무관(062-613-3570) 박명순 주무관(062-613-3572)
대전광역시	일자리노동경제과	정환승 팀장(042-270-2660) 박경희 주무관(042-270-2662)
울산광역시	일자리노동과	박정희 사무관(052-229-6840) 박선희 주무관(052-229-6842)
세종특별자치시	일자리정책과	이부호 주무관(044-300-4812)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	엄부길 주무관(031-8030-2893)
강원도	일자리정책과	김 건 주무관(033-249-3241)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김기원 사무관(043-220-3351) 최연락 주무관(043-220-3352)
충청남도	일자리노동정책과	이순재 주무관(041-635-2242)
전라북도	일자리경제정책관	윤세영 사무관(063-280-2825) 최승환 주무관(063-280-2827)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	나영수 사무관(061-286-2940) 김석훈 주무관(061-286-2942)
경상북도	일자리경제노동과	김보영 팀장(054-880-2650) 유명상 주무관(054-880-2648)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과	이승은 주무관(055-211-3314)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조선희 사무관(064-710-2541) 양기호 주무관(064-710-2542)

참고 2 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및 사업현황

구분	합계 (단위: 백만원)	사업유형				
		① 무급휴직 노동자	② 특고·프리랜서	③ 단기일자리	④ 직업 훈련생	⑤ 방역비용
총사업비	234,644	93,371	107,293	33,679	271	30
국비	200,000	67,113	101,108	31,478	271	30
지방비	34,644	26,258	6,185	2,201	-	-
비율	100%	39.8%	45.7%	14.4%	0.1%	0.0%
수혜예상 인원	267,528명	118,057명	142,527명	5,864명	1,080명	
서울	13,000 (15,100)	○	○			
부산	11,000	○	○			
대구	37,000	○	○	○		
인천	10,000	○	○			
광주	7,500 (1,500)	○	○			
대전	7,500	○	○	○		
울산	7,000	○	○	○	○	
세종	3,000	○	○	○	○	○
경기	15,000 (8,720)	○	○			
강원	7,500	○	○			
충북	7,500 (1,324)	○	○	○		
충남	10,500	○	○	○	○	
전북	7,000 (7,000)	○	○	○		
전남	7,000	○	○		○	
경북	33,000	○	○	○		
경남	11,500	○	○	○		
제주	5,000 (1,000)	○	○			

* 광역자치단체 국비 배정액 아래 ( )는 자치단체에서 매칭 예정인 지방비를 말함

안내 코로나 관련 경영애로자금 지원

※ **코로나** 관련 **자금**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해서도 요건충족시 **동일하게 지원**

1. 중소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 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유** 선택

○ (지원절차)

사전상담	▪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	
온라인신청	▪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실태조사	▪ 중진공 → 신청기업
▼	
지원결정	▪ 중진공 → 신청기업
▼	
자금대출	▪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 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2. 소상공인

□ **지원목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른 국내소비 위축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융자규모** : 200억원 → 5,000억원

* 피해 확산으로 수요가 많을 경우 융자규모 확대 예정

□ **운용기간** : '20. 2. 13(목) ~ 자금 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아래의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1) 본 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전년 동기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되었음이 입증되는 소상공인

> **(예시) 자금 신청일이 2020. 02. 12.인 경우 매출액 비교**
> - 2020년도 : **2020. 01. 01.(시작일/고정)** ~ 2020.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 2019년도 : **2019. 01. 01.(시작일/고정)** ~ 2019. 02. 11.(신청일에 따라 달라짐)

* 단, 신청일 기준으로 반드시 전일까지의 매출액을 입증해야하는 것은 아니나, 가능한 최신일자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입증방식 : 아래 사항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담당자에게 입증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③ 업력이 1년 미만으로 매출액 비교가 어려운 경우, 자금신청 서류에 기재한 매출액으로 갈음

2) 기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어, 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 예) 중국과의 수출입 거래 차질로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

※ 지원업종 : 「[참고1]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이외의 모든 업종

□ **융자조건**

○ 대출금리 : 1.75% (고정금리) → 1.50% (고정금리)

○ 대출기간 : 5년 이내(2년간 거치 후 3년간 상환)

○ 대출한도 : 업체당 최대 7천만원 한도

* 동자금은 기존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내역과 무관하게 추가신청 가능
*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 지원(보증료 : 연 0.8%, 보증비율 100%)
  - 보증서 발급가능 여부는 보증서 신청 상담 후 확인 가능합니다.
* 창업 1년 미만 기업의 경우, 정책자금 지원 시 받아야 하는 사전 교육 면제

○ 융자방식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리대출

□ **대리대출 접수방식 및 지원절차**

① 자금 접수 및 확인서 발급 : [참고2]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곳 지역센터

② 신용보증서 발급 : 전국 신용보증재단
* 신용, 부동산 담보 상담 : 전국 대출 취급 금융기관

③ 대출 실행 : 전국 대출취급 금융기관(시중은행 등)

*** 취급금융기관['20. 3. 4(수)기준] : 하나은행, 우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신한은행, 부산은행, 농협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 산림조합중앙회, 국민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한국씨티은행, 기업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중앙회(18개 금융기관)**

□ **준비서류** : [참고3]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

□ **문의처** : 국번 없이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3.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참고 1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한약방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표준산업분류	업 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당초 융자제외 업종에서 지원 업종으로 변경된 사항

- **주류도매업(46331)**
- **주류소매업(47221)**
- **여관업(55102)**

참고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센터명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303-3131-1002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303-3131-1003	서울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21 0303-3131-1004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33 (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303-3131-1005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 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303-3131-1006	서울 강북구 도봉로 186,제이슨빌딩 5층 (미아동)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 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03-3131-1008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 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03-3131-1009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 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03-3131-1010	강원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 정선군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303-3131-1013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902호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303-3131-1014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연산동)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 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303-3131-1015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 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303-3131-1012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앙동3가)	중구,영도구,서구, 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303-3131-1016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 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303-3131-101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 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303-3131-1018	경남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303-3131-1019	경남 김해시 호계로 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303-3131-1066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경남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303-3131-1022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센터명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경북지역본부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303-3131-1023	대구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303-3131-1026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 남부빌딩 2층 (남부동)	안동시,영주시,문경시, 의성군,봉화군,예천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303-3131-1024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188) 구미시종합비즈니스 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 성주군,칠곡군,고령군, 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303-3131-1025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 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303-3131-1027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 청도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303-3131-1042	광주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303-3131-1043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303-3131-1044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303-3131-1047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303-3131-1067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빛가람동 192-3) 비전타워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303-3131-1048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303-3131-1045	전남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303-3131-1049	제주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303-3131-1046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 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303-3131-1050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 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303-3131-1051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남중동)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303-3131-1052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303-3131-105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 부안군
경기인천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03-3131-1031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03-3131-1035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 (송탄로 421)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화성시,오산시

	센터명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지역본부		0303-3131-1036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303-3131-103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하안동 651-1)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03-3131-1038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 이천시,여주시,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03-3131-1033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의정부동)	의정부시,동두천시, 남양주시,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03-3131-1034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03-3131-103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03-3131-1032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 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03-3131-1040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03-3131-1029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주안동)	연수구,남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03-3131-1030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 (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 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303-3131-1055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102호 (장동)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303-3131-1056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하나은행 대흥동지점)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303-3131-105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303-3131-1059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6, 문경빌딩 3층 구)황산빌딩(취암동)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303-3131-106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 2호 서산시(동문동)	서산시,태안시,당진군, 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303-3131-1061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303-3131-1057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3층	청주시,진천군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303-3131-1062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금릉동)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303-3131-1063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303-3131-106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문화회관 2층 제천시(화산동)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303-3131-1065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읍사무소 3층 (문정리 439)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

참고 3 자금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준비 서류
공통 (소상공인 확인)	① 실명확인증표(운전면허증, 노인복지카드, 장애인복지카드, 여권 등) ②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③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최근 1개월 이내) -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 건강보험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부과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상공인확인서 中 택1 ④ 매출액 확인서류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면세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 단, 직전 또는 당해연도 창업기업은 융자 신청서 상 연매출액으로 대체 * ③번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로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생략 가능 ⑤ **(필요시*)** 업종별 연매출액 확인 서류(최근 1년간) -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中 택1 * 하나의 기업이 상시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 2개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추가	• **매출 10% 감소 확인서류** - ① VAN사 또는 카드사를 통한 매출액(카드사로부터 매출액 입금내역이 확인되는 사업자 통장사본 등) ② POS로 확인된 매출액(핸드폰 사진, 화면 캡쳐, 인쇄물 등)

□ 준비서류 (신용보증재단 제출용)

구분	준비 서류
공통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최근 3년) (면세의 경우 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 ③ 납세증명서 ④ 소득금액증명(18년) ※ 상기 서류 이외의 추가 서류는 해당 지역 신용보증재단으로 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지원제도 등 안내

〈노동정책담당관, '20.3.9.(월)〉

Ⅰ 근로자 지원제도

1 휴업수당

► **(주요내용)** 근로자의 과실 없이 근로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휴업기간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대상**

○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업주로부터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

*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여 근로시간이 단축된 경우, 단축된 근로시간도 휴업(부분휴업)에 해당함(다만, 취업규칙 등 근로조건 변경절차, 당사자간 동의에 의한 단축은 휴업으로 볼 수 없음)

□ **지급기간** : 휴업시작일로부터 휴업종료일까지

□ **지급조건**

○ 사업장 내 근로자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은 없으나, 감염 확산 우려 또는 매출감소(고객감소,

예약취소)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 휴업 결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휴업 또는 휴직 명령을 한 경우

* 확진환자 및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등의 발생으로 보건당국의 격리조치로 인하여 불가항력적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으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구체적 지급내용

○ 평균임금의 70%이상의 수당(다만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 정의

○ 평균임금 :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통상임금 :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

※ 휴업수당 산정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50만원,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으로 175만원 지급

평균임금 250만원 × 70% = 175만원 < 통상임금 20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여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50만원, 월 통상임금이 160만원인 경우, 휴업수당으로 160만원 지급

평균임금 250만원 × 70% = 175만원 > 통상임금 160만원

□ 지급절차

○ 휴업수당은 별도 정함이 없는 경우 임금지급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급여 통장으로 지급해야 함

* 임금지급일에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이를 신고하여 구제받을 수 있음(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2 생활지원비

► **(주요내용)**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통지를 받고, 치료를 받기 위해 입원한 기간 또는 격리조치 기간 동안 소득공백이 발생한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

►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 시 · 도지사 및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근로자

*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기간

□ 지원조건

○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된 경우

* 보건당국이 아닌 자의적 판단에 의한 자가격리는 해당되지 않음

□ 구체적 지원내용

○ 주민등록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 지급

* 지원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1인 가구로 적용
* 가구 구성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5인 가구 금액으로 적용

(단위: 원/월)

가구 구성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지원 금액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 지원금 산정예시(4인가구 기준)

(1)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2일인 경우 : 1,054,285원
= (1,230,000만원÷14일)×12일
* 14일 미만은 지원금액을 14일로 나누어 일할계산

(2)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4일 이상 1개월 이하인 경우 : 1,230,000원

(3) 입원 또는 격리 기간이 1개월 12일인 경우 : 2,284,285원(①+②)
① 1개월분 1,230,000원 ② 12일분 1,054,285원

□ 지원(신청)절차

지원금 신청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생활지원비 지급
근로자 →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 생활지원비 신청서[붙임1]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대리신청의 경우) 위임장[붙임2],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3 가족돌봄휴가 비용

► **(주요내용)**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교)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한 상황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감안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정부가 한시적으로 직접 지원

* 가족돌봄휴가는 회사 취업규칙 등에 '유급'으로 명시하고 있는 규정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임

► **(관련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 제2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주가 '가족돌봄휴가'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 지원기간 :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 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부부합산 10일)이 지원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조건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되나 감염병 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해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 격리 대상인 경우

□ 구체적 지원내용

○ 1일 5만원 기준,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부부합산 최대 50만원 지원

* 한부모 가정의 경우 최대 50만원 지원
*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며,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의 경우 1일 2만5천원 지원

□ 지원(신청)절차

가족돌봄휴가 신청	→	가족돌봄휴가 사용	→	가족돌봄휴가비용 (온라인)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근로자에게 가족돌봄휴가 비용 지급
근로자 → 사업주		근로자		근로자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신청)		

* '20.3.16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 시 준비서류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현재 전자시스템 구축 중)

※ 문의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4 실업급여(구직급여)

► **(주요내용)**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코로나19로 인해 권고사직 등 사유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 지원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4장 실업급여, 제2절 구직급여
(법 제40조부터 제63조 참조)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 폐업, 휴업, 인력 감원 등 조치로 사업주로부터 권고사직, 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계약연장 거부) 등의 통보를 받아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근로자

* (제외)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거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 지원기간 : 연령(퇴사 당시 만 나이 기준)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 지원조건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으나 비자발적으로 실직하게 된 경우

※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인 경우 위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월간 동안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인 경우(다만,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

* 초단시간근로자 : 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 피보험단위기간 :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로, 현실적으로 근로한 날을 요하는 것은 아님 (예시) 월-금 소정근로일,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유급주휴일인 사업장의 경우 토요일은 보수지급이 없는 날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

○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 이외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 참조

□ 구체적 지원내용

○ 1일 평균임금 60% × 소정급여일수(1일 상한액 66,000원, 1일 하한액 60,120원)

*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6,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66,000원 기준으로 지급, 1일 평균임금의 60% 금액이 60,120원에 미달하는 경우 60,120원 기준으로 지급

□ 지원(신청)절차

실업신고	→	구직신청	→	수급자격인정신청	→	구직활동 후 구직급여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실직자에게 구직급여지급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실직자		실직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직자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인터넷신청 가능)		

* 실업신고 : 사업주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를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로 신고

* 구직신청 : 실직한 근로자 본인이 직접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

* 수급자격인정 신청 : 수급자격 신청교육 이수(온라인을 통해 수강 가능, 고용보험홈페이지 www.ei.go.kr → 상단의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후 거주지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인터넷 접속 환경이 갖추어지지 않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 설명회 수강 가능

* 구직급여 신청 :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붙임3]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II 사업주 지원제도

1 유급휴가지원비

► **(주요내용)** 감염병예방법 조치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게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

► **(관련법령)**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제외)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이 이행하지 않은 자, 국가 등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 **지원기간**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중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지원조건

○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를 발부 받은 근로자에게 해당 기간 동안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별개로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

*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는 중복 지급되지 않으므로,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비는 지원받을 수 없음

□ 구체적 지원내용

○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상한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지원(신청)절차

유급휴가 부여	→	지원금 신청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국민연금공단 지사		

* 방문, 우편 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붙임4]

○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입원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확인서[붙임5]

○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 고용유지 지원금

►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하여 생산량감소, 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사전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휴업 및 휴직 등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그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수당(휴업수당)을 지급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이후 1개월까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않은 기업에게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1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 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휴직,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거나 그 밖에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안정을 위한 조치로 근로자의 임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감소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근로자에게도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제외) 사업주가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거나, 고용유지조치를 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지원금 등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금전적 지원을 받는 경우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감소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나 한시적으로,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

* 코로나19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업 서비스업, 숙박업, 보건업(병·의원 등) 등이 지원 대상이며, 위 예시 이외에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코로나19 관련 업종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됨

□ **지원기간** : 상향된 지원 수준(3/4~2/3) 은 한시적으로 적용('20.2.1.~'20.7.31.)

* '20.2.1. 이전 휴업 및 휴직한 기간은 기존 수준(2/3~1/2)으로 적용

□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1개월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전체 피보험자의 총 근로시간이 20/100이 초과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실시하거나,

*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기준달)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조치계획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첫날부터 고용유지조치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근로자 감원이 없는 경우

□ **구체적 지원내용**

○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의 3/4~1/2(1일 상한액 6.6만원, 연 180일 이내)

*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인건비의 3/4 지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 2/3 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기준(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관

산업분류	분류기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
1. 제조업[다만,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34)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C	500명 이하
2. 광업	B	300명 이하
3. 건설업	F	
4. 운수 및 창고업	H	
5. 정보통신업	J	
6.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다만, 부동산 이외 임대업(76)은 그 밖의 업종으로 본다]	N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9. 도매 및 소매업	G	200명 이하
10. 숙박 및 음식점업	I	
11. 금융 및 보험업	K	
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	

13.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 업종의 구분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 지원금 산정예시(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인건비 3/4 지원)

(1) 평균임금이 200만원인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평균임금 70%)을 지급한 경우, 기업부담분은 35만원

* 휴업수당 140만원 중 3/4 금액인 105만원은 정부에서 지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고용유지조치로 단축한 근로시간 60시간(월)에 대해 수당으로 40만원을 지급한 경우, 기업부담분은 10만원

* 수당 40만원 중 3/4 금액인 30만원은 정부에서 지원

□ 지원(신청)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1. 고용유지(휴업 등)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계획서 [붙임6]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사업장의 근로시간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 양식없음)

[고용유지(휴업 등)조치 실시 이후 지원금 신청 시]

○ 고용유지조치(휴업 등) 지원금신청서 [붙임7]

○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출퇴근카드, 출퇴근기록부 등 출퇴근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고용유지(휴직) 지원금 신청

○ 고용유지조치(휴직) 계획서 [붙임8]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았음을 입증하는 자료 또는 고용조정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매출액 감소,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서류)

○ 노사협의회 회의록, 대상자명단, 노사협의서, 근로자대표 선임서 등 노사가 협의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도 양식없음)

[고용유지(휴직)조치 실시 이후] 지원금 신청 시]

○ 고용유지(휴직)조치 지원금 신청서 [붙임9]

○ 휴직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 휴직근로자의 휴직수당 지급대장 사본(계좌이체 내역 등)

○ 휴직을 증명하는 서류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 서울시 '마을노무사'가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관련 무료 노무컨설팅 제공 예정

3 유연근무제 지원금

► **(주요내용)**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근로자들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선택근무제를 사용하는 경우 사용 횟수에 따라 사업주에게 노무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최근 코로나19 관련하여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 이용이 집중되거나 특정 시간대에 점심 또는 휴게시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함에 따른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기존 절차를 간소화 하여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법」 제2조 참조

► **(관련법령)** 「고용보험법」 제25조 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1.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 사업

2. 피보험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사업

3. 그 밖에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관련규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103호(2020년 1월 1일 시행)>

□ 지원대상

○ 유연근무제 사용을 허용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

* (제외)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지원기간 : 근로자 1인당 최대 1년 한도로 지원

□ 지원조건

○ 지원금 지원 대상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선택근무제, 원격근무제 중 하나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하고 있어야 함

* 선택근무제는 아래 내용이 명시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가 필요

* 서면합의 명시사항 ① 대상 근로자의 범위(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 제외), ② 정산기간(1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 ③ 정산기간의 총 근로시간, ④ 반드시 근로하여야 할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⑤ 근로자가 그의 결정에 따라 근로할 수 있는 시간대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작 및 종료 시각, ⑥ 표준근로시간(유급휴가 등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1일의 근로시간, 근로자대표와 사용자 합의해 결정)

○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는 통상 근로시간에서 최소 30분 이상 변경한 경우

○ 지문인식, 전자카드, 그룹웨어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을 관리

* 다만 코로나19에 대응하여 한시적으로 재택근무 근태 관리는 이메일과 메신저를 통한 업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사업주에게 보고하는 방식도 허용

□ 구체적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주 1~2회 유연근무제 사용 시 5만원, 3회 이상 사용 시 10만원

○ 연간 총액은 주 1~2회는 260만원, 주3회 이상은 520만원

□ 지원(신청)절차

사업참여신청서 제출	→	유연근무제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사업주에게 지원금 지급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사업주 → 근로자		사업주 →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

* 인터넷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 상단의 "기업서비스" → "고용안정장려금" → "통합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지원절차 간소화 :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심사절차를 월 1회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하였던 것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판단하여 심사위원회 개최없이 수시로 심사·승인하여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신청서류** (* 기타 필요시 이외 자료가 추가요청 될 수 있음)

- ㅇ 고용안정장려금 참여신청서 [붙임10]
- ㅇ 사업계획서 [붙임11]
- ㅇ 사업자등록증
- ㅇ 심사우대 입증서류 및 중견기업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ㅇ 매출액 및 자산 현황 증빙 서류
- ㅇ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서 및 동 제도 도입이 명시된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 포함)
- ㅇ 월별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
- ㅇ 제도도입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 인정)

  * 코로나19로 재택근무의 경우 한시적으로 이메일 및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를 활용하여 관리하는 것도 허용

※ 문의 :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금융위원회	보 도 (참 고) 자 료				• 혁신금융 • 포용금융 • 신뢰금융
	보도	2020.2.28.(금) 14시부터	배포	2020.2.28.(금)	

1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현황

□ **(내용)** 정부는 지난 2.7일(金)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금융부문 지원방안 주요내용 >

❶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❷ **[민간 금융회사] 은행**들은 **신규대출** 및 **금리감면** 등 **특별 프로그램** 가동, **카드사**들은 **무이자할부 및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청구유예** 등 추진

❸ **[애로상담] 금감원「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 **(상담실적)** **2.7 ~ 2.26일간**(14영업일) 금감원 및 기관별 상담창구를 통해 **약 5만건의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 **업종별**로는 **음식점업·소매업·도매업** 등에서 문의가 많았으며, **내용별**로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한 문의**가 **4만여건**(79.7%)으로 **상당부분**이었습니다.

< 업종별 상담건수(2.7 ~ 2.26일, 건) **>**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업종 구분	상담 실적
음식점업	17,413	운수·창고업	1,521
숙박업	1,238	자동차 제조업	345
소매업	9,113	기계·금속 제조업	773
도매업	4,161	섬유·화학 제조업	545
여행·레져업	1,512	기타	13,401
총 계		**50,022**	

□ **(지원실적)**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및 카드사 등 금융회사를 통해 **총 24,997건, 약 1조 3,914억원**(신규 약 4,606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 산은·기은·신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로 **약 3,796억원이 공급**되었고, **기존 대출·보증**은 **총 13,125건**(약 6,074억원)**의 만기가 연장**되었습니다.

○ **시중은행**들은 **약 810억원**을 **신규로 대출**하고, **만기연장·상환유예**로 **191건**(약 1,358억원)**을 지원**하였으며, **카드사**들도 **금리 및 연체료 할인 등**으로 **약 91억원**(1,05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 기관별 금융지원 현황(2.7 ~ 2.26일) **>**

<table>
<tr><th colspan="2">정책금융기관</th><th colspan="2">민간 금융회사</th></tr>
<tr><td>총계</td><td>11,317.0억원, 22,790건</td><td>총계</td><td>2,596.9억원, 2,207건</td></tr>
<tr><td>대출</td><td>(신규) 2,493.3억원, 4,145건
(만기연장) 1,281.3억원, 179건
(금리우대 등) 421.9억원, 115건</td><td rowspan="2">시중은행</td><td rowspan="2">2,505.6억원, 1,148건
* 신규대출 809.5억원, 926건
만기연장·상환유예
1,358.3억원, 191건
금리우대 등 기타 337.9억원, 31건</td></tr>
<tr><td>보증</td><td>(신규) 1303.1억원, 1,571건
(만기연장 및 원금상환유예)
5,766.8억원, 16,724건</td></tr>
<tr><td>수출금융</td><td>(신용장 만기연장)
50.7억원, 56건</td><td>카드사</td><td>91.3억원, 1,059건
* 금리·연체료 할인 77.2억원, 955건
결제대금 청구유예 등
14.1억원, 104건</td></tr>
</table>

○ 업종별로 보면 **음식점업**(5,305건)의 지원이 **가장 많았고, 업체당 평균 지원규모**는 **약 0.56억원** 수준입니다.

< 업종별 금융지원 현황(2.7 ~ 2.26일, 건, 억원) **>**

구 분	정책금융		시중은행		카드사		총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음식점업	4,531	1,182.3	290	475.5	484	35.5	**5,305**	**1,693**
숙박업	285	832.3	81	585.5	3	0.5	**369**	**1,418**
소매업	4,512	1,500.9	186	194.0	200	17.9	**4,898**	**1,713**
도매업	2,731	1,762.4	125	192.6	27	2.0	**2,883**	**1,957**
여행·레져업	697	302.8	37	29.9	46	4.2	**780**	**337**
운수·창고업	1,313	521.1	-	-	10	7.2	**1,323**	**528**
자동차 제조업	171	689.2	13	178.6	-	-	**184**	**868**
기계·금속 제조업	967	943.0	36	145.2	18	1.8	**1,021**	**1,090**
섬유·화학 제조업	544	506.7	22	83.7	-	-	**566**	**590**
기 타	7,039	3,076.4	358	620.7	271	22.3	**7,668**	**3,719**

□ **(평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는 있으나, **지원현황 분석 결과** 아직 **소상공인들의 애로**를 **충분히 해소**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고,

○ **현장**에서 **지원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제대로 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에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금융권**이 코로나19로 인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지원방안을 보완·확대** 하였습니다.

2 추가 금융지원 방안

1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소상공인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1 **(소상공인)** 경기둔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은 기업은행**(초저금리대출 등), **지역신보**(보증지원)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초저금리·우대금리 대출)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상품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기은, 1.7조원 → **4.2조원**(+2.5조원))

* 초저금리 대출 : 1.2조원 → **3.2조원**(**+2.0조원**)
우대금리 대출 : 0.5조원 → **1.0조원**(**+0.5조원**)

ⅰ) **(초저금리 대출) 기존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
(1.2조원 → **3.2조원 (+2.0조원)**)

-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 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도소매, 음식, 숙박은 5인 미만) 소상공인 등
- **(금리) 3년간 1.4% 수준**(4년차 이후 시장금리 적용)
- **(보증료율) 1년간 감면**(1.2% → **0.5%**)

※ 통상적인 대출에 비해 **약 3%p 금리·보증료 부담 감면 효과**
(금리 : 3.64% → 1.4%(△**2.24%p**). 보증료 : 1.2% → 0.5%(△**0.7%p**))

- **(기타) 보증비율 인상**(90% → 100%)
- **(심사기간) 보증서 발급일부터 통상 2~3 영업일**

ⅱ) **(우대금리 대출) 기존대비 2배 수준으로 확대**
(0.5조원 → **1.0조원(+0.5조원)**)

- **(대상)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초저금리대출과 동일)
- **(금리) 통상 2%후반**(일반대출 4%후반 → 2%후반(최대△2%p 감면))
  (기업 신용도·담보별로 금리 차등 가능)
- **(심사기간) 대출신청일로부터 통상 5영업일**

※ 대출문의 : **기업은행(대표번호 : 1588-2588, 1566-2566)**

② **(지역신보 재원확충) 은행권 출연료율 인상***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역신보 보증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지역신보, 16.7조원 → **17.2조원(+0.5조원)**)

* 은행권 지역신보 출연료율 : 0.02%→0.04% (※ 지역신보법 시행령 개정 사항)

2 **(중소·중견기업)**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은 **신보의 P-CBO, 산은·기은·수은의 정책금융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구조고도화」,「설비투자 붐업(Boom-up)」프로그램 등

① **(P-CBO)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해 **P-CBO 발행 규모를 확대하겠습니다.** (1.7조원 → 2.2조원 (+0.5조원))

i) **(규모 확대)** 신보·중진공, 1.7조원 → **2.2조원 (신보, +0.5조원)**

- **(지원대상) 주력업종**(자동차, 조선 등) **등 중소·중견기업**
  * 주력업종 등 편입비중 **70%**, 기타 업종 30%
- **(기업당 편입한도) 충분한 자금공급**이 되도록 **기업당 편입한도 확대**(중소기업 150억원 → **200억원**, 중견기업 250억원 → **350억원**)
- **(후순위채) 기업의 후순위채 인수부담**을 **감경**
  (인수비율 : 3% → **1.5% 수준**(3년 만기 기준))

※ P-CBO를 통해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 가능**
(일반대출은 통상 1년 만기 대출 → 회사채는 **3년 만기**)

- **(심사기간) 현장조사일**로부터 **자금수령일까지 약 1.5개월**
  * 기업실사, 편입심사, 유동화대상 회사채pool 구성, 회사채 발행 등 절차 필요

ii) **(재발행 지원) P-CBO를 이용하는 기업**이 **회사채 만기도래** 시 원활한 재발행을 위해 **재발행 요건을 완화**

* P-CBO 만기도래 시 재발행 조건 :
(현행) 기초자산의 20% 이상 상환 → (개선) **10% 이상 상환**

※ 지원문의 : **신용보증기금(대표번호 : 1588-6565)**

② **(시설자금 등) 「산업구조 고도화**('20년 3조원)**」, 「설비투자 붐업**('20년 4.5조원)**」** 등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등을 위한 자금지원**도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 **❶ 설비투자 붐업 : '20년 중 4.5조원**
> - **(지원대상) 국내소재 중소·중견기업**
> - **(자금용도) '20년 중** 이루어진 신규 설비투자
> - **(금리) 최저 1.5%** (기업 신용도 등에 따라 차등)
>
>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수은(3779-6114)**
>
> **❷ 산업구조고도화 : '20년 중 3조원**
> - **(지원대상) 주력산업 및 신산업 영위 중소·중견기업**
> - **(자금용도) 시설자금** (시설자금 받은 기업은 일부 운영자금)
> - **(금리) 최대 △0.7%p 감면**
>
> ※ 지원문의 : **산은(1588-1500), 기은(1588-2588, 1566-2566)**

③ **(정책금융 조기공급)** '20년 중 계획된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상반기 중 최대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당면한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권이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 **(대출 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은행에서 이용 중인 **기존 대출**에 대해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상황 안정 시까지 만기를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예시)** 금번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한 기업으로서, 원리금 연체·자본잠식·현저히 낮은 신용등급보유 등 **부실이 없는 기업**

○ 여타 **제2금융권***(저축은행, 보험, 카드사 등) **일부**에서도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만기연장에 동참**하고 있으며,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 **[카드사] (지원대상) 코로나19 피해사실이 확인**된 **영세가맹점 등**(카드사별 상이)
(지원내용) 신용대출·사업자금대출 등 **3 ~ 12개월간 만기연장·상환유예**

○ **대구·경북** 등 코로나19 특별관리지역의 경우 **은행권의 대출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시 전화신청 등 **비대면 심사가 적극 활용**록 **지도**하

□ **(신규자금 공급)**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기존 대출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긴급경영안정 자금**을 **총 3.2조원 규모**로 **신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인하**된 우대금리로 자금을 이용할 수 있어 **이자부담도 줄일 수 있습니다.**

< 시중은행 신규자금 지원 : 3.2조원 >

❶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 피해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❷ **(지원내용)** 기존 은행 대출에 비해 **1~1.5%p 우대**된 **낮은 금리**로 개인·업체별 **최대 1~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 은행별 우대 수준, 대출 한도 상이)

❸ **(지원절차)** 영업점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후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대출상담 및 여신심사***를 거쳐 지원

* 적극적인 정성평가를 통해 일반 여신에 비해 신용도 등에서 완화된 심사 적용 유도

□ **(이자·보험료 납입 유예)** **일부 은행과 보험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이자*나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산·기은 및 일부 은행**은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자납입 유예**(예 : **만기연장 시점에 차주 신청** 시 심사를 통해 **연말까지 이자납입 유예 시행**(산은))

** **A보험사**는 코로나19로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해 신청일로부터 **최대 6개월** 동안 **보험료 또는 보험계약대출 이자납입을 유예**
(지원절차)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고통을 **금융권이 분담**할 수 있도록 **납부 유예 등의 확산**을 위해 금융업권과 **지속적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저신용·저소득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미소금융·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서민금융상품 >

❶ **[미소금융] 6등급 이하**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를 대상으로 **연 2~4.5% 금리**로 **운영·시설자금 등**을 대출

❷ **[새희망홀씨Ⅱ]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0.5% 이하**로 **최대 3천만원 대출**

❸ **[햇살론[17]] 연소득 35백만원 이하** 또는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연17.9% 이하**로 **최대 7백만원**(특례지원시 1.4천만원) **대출**

□ **(신속한 금융제공)** **보험사와 카드사**에서는 **자금애로가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신속히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즉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예) B생명보험사는 보험금청구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코로나 19 관련 보험금 청구시 **현장조사 없이 즉시 처리**(접수일 D+1일 이내 보험금 지급)

○ 연매출 5~30억원 이하의 **중소 신용카드가맹점**들(약 36.1만개)은 3.3일 결제분부터 3월 한달 동안(필요시 연장) **2영업일 내에 카드결제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결제일+3영업일) → (결제일+2영업일)로 대금지급기간 1영업일 단축

⇨ 상세한 금융회사별 금융권 지원내용과 연락처는 참고(p11 이하)

3 금융권은 지역사회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노력에도 적극 동참해 나가겠습니다.

1 금융권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 **금융회사 점포 내에 입점** 중인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임대료를 감면***하고, 금융회사 **구내식당 휴무일을 지정**함으로써 인근 식당 이용을 유도하는 등 **주변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 **(예) 기업은행**은 기업은행 **보유 건물에 입주**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임대료**를 **3개월 동안 30% 인하**(월 100만원 한도)

○ 필요한 **집기·물품 등의 구매**를 최대한 **상반기에 조기집행**하여 **당장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소매업자를 돕고,**

- **입학식과 졸업식 취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농가**를 위해 **대량의 꽃을 매입**하는 등 **상생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부 상여금 등**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지역상권

및 전통시장의 **수요 진작**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예)** C은행의 경우 직원이 **온누리 상품권 구매·이용**을 장려하는 **캠페인 실시**
D보험회사의 경우 **우수 직원·설계사 자체시상**시 **온누리 상품권 지급 추진**

2 **카드사**에서는 **지자체와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역의 카드매출정보 등**을 활용한 **빅데이터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겠습니다.

3 **지역 內 방역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움이 경감**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ㅇ 독거노인·복지단체 등을 **취약계층**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마스크와 손세정제 등을 제공**하고, **격리 수용**중인 **중국 교민**들에게 **유심칩을 지원**하는 등 **사회공헌을 지속**하겠습니다.

< 금융권 사회 공헌활동 사례 >

국 민	대구·경북 **전통시장서 생필품 구입**(1억원) **후 기부,** 마스크 무상지원 격리중인 **우한교민**들에게 **데이터 무제한 유심칩** 800개 제공 등
신 한	은행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마스크 무상지원
하 나	그룹소유 건물 소상공인 **임차료 3개월간 30% 감면** (대구·경북은 전액면제) 대구·경북·아산, 대한의사협회 등에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공급
농 협	**화훼농가 40만송이 꽃** 매입 (입학·졸업식 취소 피해), 범 농협 마스크 무상지원
우 리	**대구지역 전통시장** 통해 **지원 물품 구매** 후 **저소득 고위험군 식료품 지원** 등
삼성생명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피해자를 위한 **후원금** 전달
농협생명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물품 구매**
MetLife 생명	메트라이프재단을 통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피해자 물품 지원**
신한생명	**사회소외계층**(독거노인 등) **마스크** 전달
DB손보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SGI 서울보증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마스크** 등 지원
농협손보	대구·경북·경기·전남 농촌지역에 **마스크 및 손세정제** 지원(고연령층 우선 배부) 화훼농가 지원을 위한 **꽃 나눔행사** 진행

3 향후계획

□ 향후에도 2.7일과 금일(2.28일) 발표된 **금융지원 방안**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를 지속**하겠습니다.

○ 금융상황 점검회의와 대외리스크 점검 금융부문 TF 등을 통해 **금융지원 현황**과 중기·소상공인의 **자금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조치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주 중 **5대 금융지주 회장** 및 **금융권 협회장**과의 조찬회동을 통해 **금융권**이 **당면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이 **지원 프로그램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접근성을 개선**하여 보다 편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 아울러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방안**의 필요성을 수시로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약 3.2조원)

은 행	지원 (억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연락처
농 협	2,5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의원·여행·숙박·공연업종 등 피해 우려 소상공인 ▷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입원·격리 개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최고 1%(농업인 1.5%) 금리감면 • 최장 12개월 이자납입 유예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14-1578
신 한	5,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151-2568
우 리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본부심사 통해 추가 지원 가능)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5349
하 나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02-1971
국 민	4,000	▷ 코로나19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2-2073-8976
수 협	1,000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어업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 연장,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02-2240-0256
대 구	3,000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중인 중소기업·소상공인 ▷ 숙박·음식점업 등 간접 피해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3-740-2328
부 산	2,000	▷ 코로나19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1-620-3438
광 주	2,000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 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3%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2-239-6507
제 주	300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억원 신규대출 • 최고 1.5%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4-720-0176
전 북	2,000	▷ 여행·숙박·음식점·수출입 등 피해 예상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63-250-7569
경 남	2,000	▷ 중국 수출입 중소기업 ▷ 관광·여행·숙박·음식점 등 피해우려 중소기업·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5억원 신규대출 • 최고 1.0% 금리감면 • 기존대출 기한연장, 할부상환금 납입 유예	055-290-8626
총 계	3조 1,800	-	-	

참고2 금융업권 지원센터 연락처

기관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 정책금융기관 >			
산업은행	☎ 787-5612	수출입은행	☎ 3779-6114
	☎ 787-5615		☎ 3779-6253
기업은행	☎ 1588-2588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1357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042-363-7130
서민금융진흥원	☎ 1397		
< 은 행 >			
농 협	☎ 1661-3000	대 구	☎ 1566-5050
신 한	☎ 1577-8000	부 산	☎ 1588-6200
우 리	☎ 1588-5000	광 주	☎ 1600-4000
하 나	☎ 1588-1111	제 주	☎ 1588-0079
국 민	☎ 1588-9999	전 북	☎ 1588-4477
경 남	☎ 1600-8585	은행연합회	☎ 3705-5253
< 신용카드사 >			
신 한	☎ 1544-0887	비 씨	☎ 1588-4000
KB국민	☎ 1588-1688	하 나	☎ 1800-1111
삼 성	☎ 1588-8700	우 리	☎ 1588-9955
현 대	☎ 1577-6000	롯 데	☎ 1588-8100
< 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 3702-8582	생명보험협회	☎ 2262-6683

참고3 **은행권 코로나19 신규 자금공급 세부내용**

1 농협은행

※ 문의처 : 02-2014-1578, 2080-7622

○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입원·격리된 자, 중국 수출입 실적이 있는 중소기업 및 병·의원, 관광·여행·숙박·공연 등 피해우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개인당 최대 1억원 신규대출
- 농업인 최대 1.70% 이내, 농업인 외 최대 1.0% 이내 금리감면
- 대출실행일로부터 최장 12개월(6개월 기준 2회 가능) 이자납입유예
- 기존 대출 당초 대출 취급 시와 동일한 채권보전을 충족하는 경우 영업점 전결로 재약정, 기한연기 취급 가능
- 할부상환금 납입유예 : 할부상환금의 할부금납입일로부터 12개월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30일)
- 수출환매입외환 입금지연이자 우대

○ **지원절차**

- 해당 업체 매출액 감소, 중국 수출입실적 입증, 예약취소 현황 등 관련 자료를 통해 전결권자가 피해여부 검토 후 지원

2 신한은행

※ 문의처 : 02-2151-256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영업점장 등이 피해사실 확인)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만기 도래시 무내입 연기 가능
- 분할상환금 유예 가능
- 최고 1.0%p 금리 우대

[수출입]

- 對 중국 수출매입외환 관련 입금지연이자 가산요율(1.5%) 일괄면제
- 무신용장방식의 경우 징수 당시 환가요율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등록 1개월 연장
- 피해기업(중소/중견기업) 환가료 인하 신청시 지원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 매출액 감소 자료 등 증빙자료의 종류에는 제한 없음

3 우리은행

※ 문의처 : 02-2002-534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수출입/여행/숙박/관광 등 업종 제한사항 없음

ㅇ 지원내용

[대출]

- 경영안정 특별지원대출 지원한도 1,000억원(최대 1.3% 금리우대)
- 만기 도래시 무상환 만기연장(분할상환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
- 지역신용보증재단 연계 특별출연 협약대출(지원규모 1,500억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1.5%) 면제
- 수출환어음 부도처리 기간 30일 연장
- 對 중국 수입기업 수입신용장 수수료 우대(개설/인수 수수료)

[컨설팅]

- 코로나19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긴급대응반 운영
- 피해기업 특화 경영/재무/세무 등 컨설팅 지원
- 중국 우리은행 연계 중국 무역관련 정보 제공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유선 상담후 방문 접수
- 피해사실 입증 가능 증빙자료 필요(매출액 관련 자료 등)

4 하나은행

※ 문의처 : 02-2002-1971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범위내 금리 우대
- 만기 도래시 최장 1년(분할상환금은 6개월) 이내 상환유예
- 지역신보 특별출연을 통한 추가 대출지원

[수출입]

- 수출입 관련 입금지연에 따른 부도처리 유예

ㅇ 지원절차

- 피해기업이 영업점 앞 금융지원 신청(신규, 상환유예, 금리감면 등)
- 심사부서는 우선 심사를 통한 적극적 지원

5 국민은행

※ 문의처 : (대출) 02-2073-8976
(외환) 02-2073-8929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관광 · 여행 · 숙박 · 공연 등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만기도래하는 여신 의무상환 비율 면제하여 기한연장 우대
- 최대 1.0%p 금리우대
- 피해일시 전영업일 기준으로 이자납입상태가 정상인 대출에 한하여 연체이자 면제

[수출입]

- 수출환어음 관련 환가료율 우대, 입금지연이자 감면
- 부도유예(부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 수입신용장 개설 및 인수 수수료율 우대
- 수입화물선취보증료율 최대 3.0%p 범위 내 우대
- 수출입 관련 당 · 타발 송금수수료 면제, 수출입업무 및 당 · 타발 해외송금 취급 시 최대 90% 환율우대

※ 기타 자체 지원제도

- 원활한 금융지원을 위한 은행 내「코로나19 금융지원 신고센터」 운영중

ㅇ 지원절차

- 『코로나19 관련 피해 지원 신청서 및 확인서』 접수 후 영업점 담당자(팀장, 팀원)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거나, “관할기관의 장” (시장 · 군수 · 구청장 또는 읍 · 면 · 동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6 수협은행

※ 문의처 : 02-2240-025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수협은행 거래 중이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어업인

  * 중국 수출입 무역업체, 숙박업, 운송업, 여행업, 음식점업 등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0%(어업인 1.5%) 금리 우대
- 분할상환 대출 원금 및 이자 상환 유예
- 기존 대출 무상환 연장

[수출입]

- 수출입 결제 연장 및 금리·수수료 우대

ㅇ 지원절차

- 거래 중인 영업점을 통해 지원 신청
-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사실 입증 서류 제출
  · 본인 및 가족 코로나19 확진 증빙 서류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장 폐쇄 증빙 서류
  · 매출,영업이익 감소를 증빙할수 있는 서류 등

7 대구은행

※ 문의처 : 053-740-232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직접 피해기업 : 코로나19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 국내의 경우 지자체(행정구역) 기준, 국외의 경우 확진 발생지역에서 사업 영위 또는 발생지역 소재 기업과 수출입 거래 중이거나 예정인 업체

- 간접 피해기업 : 확진 발생지역 외에서 도·소매업, 음식점업, 운수업, 여행 관련 서비스업 등을 영위 중인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내부 심사기준 완화(신속 지원)
- 영업점장 전결 감면 금리 범위 내 금리감면 지원

ㅇ 지원절차

- 은행 방문 및 상담 후, 현장조사를 통해 지원대상 여부 판단

※ 기타 자체 지원제도

- “피해지원 종합 상담팀” 운영을 통한 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기업개선 지원, ② 경영애로 개선을 위한 기업컨설팅 우선 지원

8 부산은행

※ 문의처 : 051-620-3438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영업점장 전결로 산출금리에서 1.0% 범위 내 감면
- 만기 도래일부터 최장 1년간 무내입 기한연기 또는 분할상환유예

[수출입]

- 중국지역과 거래하는 중소 수출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및 부도등록 유예 실시

ㅇ **지원절차**

- 피해사실 입증자료 첨부하여 주거래 영업점에서 대출 상담 및 신청

9 광주은행

※ 문의처 : 062-239-6507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업종 등 제한 사항 없음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고 1.3% 금리우대
- 만기연장 최고 1.0% 금리우대, 분할상환 유예

[기타]

- 코로나19 피해지원 종합상담반 운영 및 현장점검을 통한 컨설팅 지원

ㅇ 지원절차

- 광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판단하에 파악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필요없음

10 제주은행

※ 문의처 : 064-720-0176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내 기업 중 제주은행 여신거래고객

ㅇ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3억원
- 무내입 기간연장, 분할상환 유예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및 제주지사 코로나19 특별보증 연계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정책자금 및 공공기관 정책자금 특별 융자 연계지원

[수출입]

- 매입외환 입금 지연 시 부도등록 유예(1개월) 등

[컨설팅]

- 지역적 특색(제주도) 고려하여, 직·간접 피해고객에 대하여 컨설팅 실시

ㅇ **지원절차**

- 제주은행 영업점 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한 피해지원 상담
- 피해확인은 고객상담을 통한 직·간접 피해현황을 영업점 직원의 직접 현장실사를 통하여 확인하며, 별도의 증빙자료는 없음

11 전북은행

※ 문의처 : 063-250-7569, 063-250-7615

ㅇ 지원 대상 및 요건

- 여행, 숙박, 음식점, 수출입 등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특정업종의 제한 없음

ㅇ 지원 내용

[대출]

- 차주별 최고 5억원, 개인사업자 최대 1억원 한도
- 만기 연장, 갱신 : 만기도래시 기한연장 및 갱신 지원
- 금리감면 : 최고 1.0% 이내 감면
- 원금유예 : 원금상환 도래시, 최대 1년간 상환 유예
- 전라북도, 전북신용보증재단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연계지원

[수출입]

- 수출환어음 부도기한 유예

ㅇ 지원절차

- 영업점 전화 및 방문, 전북신용보증재단 방문
- 업종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관계로
  · 도내 주요상권 방문 및 현황분석
  · 월별 매출현황 등 관련자료 징구
  · 특례보증대출 진행시 추가지원
  · 특례보증대출의 경우 해당 기관의 지원확인방법 적용

12 경남은행

※ 문의처 : 055-290-8626

○ 지원 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전 업종 기업
- 2019.1.1부터 중국에 수출입 실적을 보유한 기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 지원 내용

[대출]

- 업체당 최대 5억원
- 최대 1.0% 금리 우대
- 대출금 상환없이 전액 기한연장 원칙, 기 적용금리 범위내 금리감면
- 분할상환금 상환 유예 : 기일 도래된 분할상환금에 대하여 영업점장 전결로 유예

[수출입]

- 수출환어음 만기연장, 부도처리 유예, 외국환수수료 감면

[신용카드]

- 결제대금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해당기간 연체료 면제

○ 지원절차

- 피해기업 면담 ⇒ 영업점장이 현장실사 ⇒ 검토 및 심사 후 지원

참고4 주요 서민금융상품 관련

[미소금융]

1. 지원요건(대상)

□ 신용등급 6등급 또는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최대 2천만원 한도로 운영·시설 자금 지원(금리 4.5% 이내)

3. 지원신청 절차

□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에서 상담 예약하거나, 가까운 미소금융 지점 내방

4. 지원신청 방법

□ 전국 169개 미소금융지점* 방문 또는 ☎ 1397 상담(서민금융통합콜센터)

*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 - 상담센터 찾기(미소지점)

[새희망홀씨]

1. 지원요건(대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

2. 지원내용

□ 근로자, 자영업자 구분없이 최대 3천만원 지원(금리 10.5% 이하)

3. 지원신청 절차

□ 은행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거나, 시중은행 창구 내방

4. 지원신청 방법

□ 시중 은행 지점(방문) 또는 콜센터

[햇살론[17]]

1. 지원요건(대상)

□ 연소득 35백만원 이하인 자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 &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인 자(저신용자를 위한 상품)

2. 지원내용

□ 자영업자, 근로자 구분없이 최대 7백만원 지원(금리 17.9%, 특례지원 시 1,400만원)

3. 지원신청 절차

□ 은행* 창구 또는 모바일앱** 신청

* KEB하나, 신한, 우리, KB국민, 기업, 농협, 수협,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등

** (근로자) 신한, 우리, 전북, 농협 / (자영업자) 전북, 농협

4. 지원신청 방법

□ 은행 창구·모바일 앱 또는 ☎ 1397 상담(서민금융통합콜센터)

참고5 **코로나19 대응 주요내용(2.7일 등)**

1 **(정책금융)**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중견기업 및 소상공인**(업종제한 無) 대상으로 **금융지원 제공**

○ **(정책금융) 약 2조원***의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우대 제공, 기존 대출·보증** 및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등

* 산은 0.3조원, 기은 0.1조원, 수은 1.0조원, 신보 0.3조원, 기보 0.1조원, 지신보 0.1조원 등

○ **(소상공인) 미소금융 확대**(500억원 → 550억원), **초저금리 대출**(기업은행)·**긴급경영안정자금**(소진공)·**특례보증**(지신보) 제공 등

○ **(항공업 지원)** LCC 운영자금 긴급융자(3천억원 한도),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2 **(애로상담)** 금감원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및 **각 정책금융기관 영업점**에 **전담상담 창구** 설치·운영

3 **(민간 금융기관)** **은행***들은 **피해 우려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 공급** 및 **금리감면** 등 **금융지원 특별프로그램** 가동

* 5대 시중은행(농협·신한·우리·하나·국민) 및 6개 지방은행(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

○ **카드사**들은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 지원 및 청구유예** 등 추진

4 **(시장안정)** **시장 모니터링 강화** 및 **불안심리 확산 방지를 도모**하면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 점검·보완**

○ 향후 **변동성이 확대**되는 경우 주의·경계·심각 등 단계별로 마련된 **컨틴전시 플랜을 신속·탄력적**으로 **조치**

5 **(시장감시)** 금융시장 內 **풍문 유포·시세 조종**을 비롯한 **불법·불공정거래** 등 각종 시장교란행위 **감시 강화**(거래소·금감원)

참고6 2.7일 발표 코로나19 정책금융기관 신규 지원(약 2조원)

지원기관	프로그램명	지원대상	지원한도(억원)
산은	**경영안정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금리감면 無	중소·중견	2,000
	KDB 경제활력제고 특별운영자금 * 기업당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중견	1,000
기은	**특별지원자금** * 기업당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감면	중소· 소상공인	1,000
수은	**수입선 다변화 대출**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신규 운영자금 지원 * 최대 중소 0.5%p, 중견 0.3%p 금리감면	중소·중견	5,000
중진공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 기업당 최대 10억원	중소	250
소진공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기업당 최대 0.7억원	소상공인	200
신보	**우대보증 프로그램** * 보증비율 상향(85% → 90%), 보증료율 최대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중소· 소상공인	3,000
기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3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95%), 보증료율 1.0% 고정	중소· 소상공인	1,050
지역신보	**특례보증 프로그램** * 기업당 최대 0.7억원 보증비율 상향(85% → 100%) 보증료율 0.8% 고정	소상공인	1,000
계			**19,500**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

<예술경영지원센터 코로나19관련 정부 지원제도 모음 및 안내 자료 참고>

■ 지원 제도

Ⅰ. 예술분야 특별지원 제도

[진행] 1. 공연장 대관료 지원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지원)
* 접수기간 : (1차) 2020. 4. 27(월) ~ 5. 6(수) 18:00
(2차) 2020. 5. 7(목) ~ 5. 19(화) 18:00
2.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용유지지원금 등
3.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4.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5.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 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공연장업 등
6. 코로나19 특별 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예정] 1. 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
2. 예술인 및 예술단체 공연 제작비 지원
3.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마감] 1.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3,4월)
2.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Ⅱ. 일반 지원 제도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2. [기재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3.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4. [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5.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6.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7.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
8. [국민연금]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
10.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11.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
12.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부담완화 방안
13.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Ⅰ. 예술분야 특별지원 제도

□ 진행 중

○ 공연장 대관료 지원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지원)

* 접수기간 : (1차) 2020. 4. 27(월) ~ 5. 6(수) 18:00
(2차) 2020. 5. 7(목) ~ 5. 19(화) 18:00
* 지원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문의 :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02-741-4199, 02-741-4155 / sgyj4188@gmail.com

○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고용노동부)

* 지원대상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민간 등록공연장
* 지원기간 : 2020. 3. 16 ~ 9. 15 (6개월)
* 지원내용 : 고용유지지원금,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
* 신청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온라인·전화 상담)

* (재)예술경영지원센터 www.gokams.or.kr / 02-708-2261, 02-708-2295

○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www.stagesafety.or.kr / 02-860-1177

□ 예정

○ 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

*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지원

○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 지원

*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 마감

○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3월,4월 마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3.20 마감)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1 진행 중

1. 공연장대관료지원 1~2차 공모 안내 (코로나19 공연예술분야 긴급지원 포함)

※ 공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공모사업 > 사업공모
https://www.arko.or.kr/m1_01/m2_01/m3_01/m4_02.do?mode=view&page=&cid=1603163&sf_icon_category=cw00000019

○ (목적)

-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 지원을 통해 민간 공연예술단체(개인)가 안정적으로 작품을 창작/발표할 수 있는 여건 마련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공연예술단체의 피해 경감 대책 시행을 통해 취약해진 공연예술계 창작여건 강화

○ (지원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및 예술인(단, 개인 창작발표의 경우에 한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기획사를 통해 대관계약을 대행한 공연은 실연한 민간예술단체(예술인) 명의로 지원신청해야 함(대행계약서 첨부 필수)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함

○ (지원내용)

- 국내 예술단체(예술인)의 공연예술분야[연극(뮤지컬 포함), 무용, 음악, 전통예술] 대관 공연

※ 뮤지컬의 경우,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신청 시, 적합 증빙(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제출 필수

ㅇ (지원규모)

-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최대 90%까지 지원 신청 가능

※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 신청사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검토하여 지원규모 차등 적용
- 단체별 1개 신청사업(동일/유사 공연작품)에 대해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1~2차 공모에 한정된 사항으로, 신청된 지원금 수요를 고려하여 예산범위 내 지원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유형)

유형 ① (기존 지원항목)	공연장 대관료 지원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 **지원대상**
  - **2019년 12월 1일부터 2020년 4월 30일까지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공연(공연일정 종료일 기준)**
    - 공연일정 종료일 기준으로 1~2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종료일 기준, 1~2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다음 회차 공모진행 시에 지원가능(1~2차 공모 지원대상 사업기간에 포함되지 않을 시, 결격사항 해당)

예시
① (공연일정) 2019.11.28 ~ 2019.12.6 → 2020년 1~2차 공모 지원신청 가능 * 2019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 지원내역이 없는 경우에 지원가능 ② (공연일정) 2020.4.26 ~ 2020.5.2 → 2020년 1~2차 공모 지원신청 불가(3차 공모 지원가능)

    - 코로나19 피해기간 중, 진행된 공연작품에 대관료 우선 지원
    ※국내 최초 확진자가 발생하여 감염병 위기경보가 '주의' 단계로 상향된 2020년 1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공연일정이 포함된 경우
- **지원항목**
  - 순수대관료(준비대관, 공연대관, 철수대관) 및 부대시설사용료 지원
  ※부대시설사용료는 대관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 단, 연습공간 사용료는 본 사업의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유형 ② (1~2차 공모 한시적 지원)	기 지급한 대관료의 미환불 금액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연이 취소되어 기 지급한 대관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이 미환불로 확정된 경우**
    - 국내 등록공연장에서 공연을 예정한 경우
    - 코로나19 피해기간(2020.1.20 ~ 4.30) 중에 최초 공연일정이 포함되고,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가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우선 지원
    ※1~2차 공모 지원신청 마감일 이후 취소 건은,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추후 공모 진행 시에 포함되어 진행될 수 있음(보건복지부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에 따른 기간 산정)
- **지원항목**
  - 코로나19로 인한 공연취소로 미환불된 대관 금액 지원
  ※환불예정인 대관료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은 지원내용에 해당되지 않음

○ **(추진일정)** 1차 접수기간 2020. 4. 27(월) ~ 5. 6(수) 18:00
2차 접수기간 2020. 5. 7(목) ~ 5. 19(화) 18:00

- 연간 추진일정
  - 단, 사업추진방향 및 코로나19 확산 경과에 따라 연간 공모일정 및 공모횟수는 변경될 수 있음

구분		공모일정	지원대상 사업기간 (공연 시작-종료 일정)
1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1차 공모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2020. 4. 27(월) ~ 5. 6(수) 18:00 마감	2019.12.1. ~2020.4.30. ***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해당기간 하단 참조**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5월 ~	
2차	2020년도 공연장대관료지원 2차 공모 ※코로나19 피해경감 우선 지원	2020. 5. 7(목) ~ 5. 19(화) 18:00 마감	
	- 지원금 교부 및 사업추진	2020. 6월 ~	

○ **(지원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 이메일, 우편, 직접 방문 접수 불가

○ **(제출서류 및 자료)**

- 제출서류 및 자료(필수 제출자료 5종)

제출자료	구분	제출방법
① 2020년도 문예진흥기금 지원신청서	필수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지원신청서 서식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제출 단계에서 '첨부파일' 면에 첨부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지원신청서_단체명 ※HWP 형식, 지정양식 사용, PDF 변환제출 금지 ※지원신청서 내 '확인서' 및 '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첨부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필수	대관료 및 부대시설사용료 대관관련 세부내역이 기재된 계약서, 대관승인 공문, 대관확정서 등 대관 관련 증빙서류 필수 제출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증빙서류_단체명 ※기획사 대행을 통해 대관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행계약서 등 추가 증빙자료 첨부 ※대관계약체결 이후 대관료 변경이 있을시, 대관료 변경에 대한 '최종 납입 금액 변동 확인서' 첨부 ※부대시설 사용에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련내역이 증빙되어야 함
(유형② 대관료 미환불 금액 지원신청하실 경우)	-	※이 유형의 경우는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지원신청서상 해당 내용을 작성해주시고, 필요할 경우 위에서 정하지 않은 관련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대관취소 관련사항 및 미환불 금액 등이 파악되는 형태면 가능
③ 대관료 집행 증빙 서류	필수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집행과 관련한 적합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혹은 전자계산서 + 이체확인증 제출 필수 -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카드 결재 영수증으로 증빙 시, 별도 이체확인증 불필요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대관료 집행증빙_단체명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사본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통장계좌 사본(선정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계좌)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통장계좌 사본_단체명
⑤ 지원단체 증빙서류 **(단체만 해당)**	필수	지원단체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사본 • 파일명 : 2020공연장대관료지원_단체증빙서류_단체명

※지정 제출양식 및 제출방법을 준수하지 않거나, 필수자료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결격사유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ㅇ **(신청 관련 문의처)** 공연장대관료지원 사업추진단

문의전화 : 02-741-4199, 02-741-4155 (응대 가능 시간 주중 10시 ~ 18시,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이메일 문의 : sgyj4188@gmail.com

ㅇ **(공연장대관료 지원사업 주요변경 사항)**

2.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구분	2019년도	2020년도	개선사항/기대효과
코로나19 피해대응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 지원 항목 신규 도입 (코로나19로 인한 미환불 대관료 등)	공연예술계 피해사례별 탄력적 지원 (현장 의견수렴 병행)
동일단체 다건신청 편의성 향상	1개 단체가 여러 건의 공연을 진행했을 경우 건별로 구분해서 각각 신청	1, 2차 공모에는 지원신청서 1개에 2건 이상의 공연을 통합해서 신청 가능 (유사한 내용을 건건이 작성할 필요 없음)	지원신청서 1건에 여러 공연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 한 번의 신청으로 끝! (기존, 공연작품별 신청에 따른 마감일 제출 부담 완화) 지원대상 확대 및 신속한 심사 진행을 통한 지원금 조기 지급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제출시점 변경	지원심의 선정 이후, 교부 과정에서 적합증빙 제출	지원신청 시, 적합증빙 제출	지원적격성 심사 선정 이후, 지원금 조기 지급
각종 공공지원금 선정단체 제한	중복지원 불가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지원받는 공연을 제외한 중복지원 허용	단, 대관료를 이중으로 청구할 수 없음 (타 공공지원사업에서 대관료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에 신청가능)
지원규모 확대	총 대관료의 최대 80%까지만 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총 대관료 90%로 상향 (부대시설 사용료 포함)	단, 과세사업자의 경우 세법상 부가세 환급 불가함
지원금 한도 확대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	단체별 1개 신청사업별 (동일/유사 공연작품) 연간 지원금 최대 3,000만원	전년대비 2배 확대로 피해금액 보전 확대 (1~2차 공모 한정)
뮤지컬 등 대형공연 지원 허용	창작뮤지컬의 경우 500석 이하 규모로 한정	▸ 라이선스뮤지컬 지원 포함 ▸ 객석 제한 규정 한시적 폐지	단, 해외 공연예술단체의 내한공연(월드투어) 제외
사업운영 절차 일원화 및 필수 제출 서류 간소화	**지원신청.교부.정산 단계별 최대 13종 서류 제출** • 지원신청 : 최대 6종 제출(지원신청서, 대관계약서, 공연장등록증, 대관요금표, 지원단체 증빙서류, 공연진행여부 증빙서류) • 교부 : 최대 5종(교부신청서,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공연진행여부 증빙서류, 통장계좌 사본) • 정산 : 최대 2종(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필수 제출서류 5종으로 간소화** ① 지원신청서 * 작성항목 기존 10개→ 3개로 대폭 간소화 ② 대관계약 증빙서류 ③ 대관료 집행 증빙서류 (전자세금계산서 등) ④ 지원금 입금 통장계좌 정보 ⑤ (단체의 경우) 법적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or 고유번호증)	NCAS 지원신청 1회로 모든 지원절차 끝!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기존의 등록공연장 여부/대관 요금표 등은 주관처가 직접 해당시설에 확인
지원적격성 심사제도 시행	지원심의를 통한 선정여부 결정(심의위원회 구성)	지원적격성 심사를 통해 지원제외/결격 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 원칙 (주관처 적격성 심사)	1~2차 공모만 한시적 적용
공모일정 변경	연 1회 정기공모에 접수	1차~2차 공모 진행 후, 횟수 및 일정 재조정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고려 탄력적 운영 예정

2. 관광 ·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제도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제도란?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인한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전환 또는 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하여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는 제도

※ 업종코드 확인 방법

▪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8443) >한국표준산업분류(5자리코드) > 검색(분류검색)에서 확인 가능
https://kssc.kostat.go.kr:8443/ksscNew_web/link.do?gubun=001#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 대규모기업 1/2~2/3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3/4
	지원 한도		1일 6.6만원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만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	지원 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3개월)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 (1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 지원	지원 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 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 요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4조제1항의 제1호만 충족해도 지급대상 선정 가능
	생계비 대부 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산재보험료 및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납부기한 연장 ○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징수 체납처분 집행유예 ×	건강보험료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체납처분 집행유예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		부과 (1명당 3만원)	면제
취업성공패키지II		중위소득 100% 이하 참여	특별고용지원 업종 실업자 소득요건 면제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융자	소득요건 (*)	(임금감소·소액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0년 월 181만원) (이외 생계비) 3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259만원)	(임금감소·소액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의 70% ('20년 월 222만원) (이외 생계비) 4인가구 중위소득 2/3 이하('20년 월 317만원)
	상환기간	최대 5년(거치 1년/상환 3~4년)	최대 8년(거치 1~3년/상환 3~5년)
	한 도 액	(임금체불생계비) 1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5백만원	(임금체불생계비) 2천만원 (자녀학자금) 연 7백만원
	대 상 자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자녀	(자녀학자금)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 자녀
고용촉진장려금		각 부처 운영 13개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만 지원가능	고용노동부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까지 지원대상 확대 적용
체당금 공인노무사 조력지원	지원대상	상시 1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까지 확대 적용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20.2.28.)」에 따라 한시적('20.3.9.~7.31.)으로 임금감소·소액생계비 등 모든 생활안정자금 융자 시 소득요건을 3인가구 중위소득 이하('20년 월 388만원)로 완화

□ 고용유지지원금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7428519

○ **(지원 대상)** 지정업종에 속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퇴직자 포함)

* 공연업 :
업종코드 R901(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또는「공연법」제92조 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

○ **(지원 내용)** 고용유지지원금 및 기타 고용안정과 실업자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원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요건 완화 및 지원 수준 상향

* **휴업·휴직 수당의 최대 90% 지원(1일 최대 7만원) 등**
* **첨부파일 <관광·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제도> 참고**

○ **(지원 기간)** 3. 16.(월) ~ 9. 15.(금)

○ **(신청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개요
▪ 취약계층(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생계비 대부 지원

[관련정보] http://www.bokjiro.go.kr/welInfo/retrieveGvmtWelInfo.do?welInfSno=176

○ **(지원 대상)**「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제10조의 직업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는 제외(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연소득금액 8,000만원 이하)

* 과거 고용보험 가입이력 필요

○ **(지원 내용)** 월 단위 200만원, 1인당 총 1,000만원 한도의 대부 지원

*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총 2,000만원 한도

* 연리 1%(신용보증료 별도), 최대 3년 거치 최대 5년 매월 균등 분할 상환

○ **(지원(신청) 절차)**

대부 신청 (인터넷 또는 방문)	→	훈련사실 및 지원대상자 확인	→	대부결정 통보 (신용보증 병행)	→	대부금 입금 (신청인 계좌)
신청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		대부 대행은행

○ **(신청 및 연락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개요

▪ 특별고용지원 업종 저소득 노동자 본인 및 부양가족의 혼례 장례, 질병 등 생활필수 자금과 임금체불 생계비를 저리로 융자하여 생활안정에 기여

[관련정보] https://www.workdream.net/default/page.do?mCode=B010010010

○ **(지원 대상)**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

○ **(지원 내용)** 의료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의 소득요건과 융자조건을 완화하고 융자 대상 및 한도 확대

○ **(지원(신청)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민원인		복지공단		복지공단		복지공단		민원인		IBK기업은행
융자신청 보증신청	→	적격결정	→	보증서 발행	→	은행통지	→	대출신청 (IBK은행)	→	대출실행

○ **(신청 및 연락처)**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3. 공연예술분야 코로나19 전담창구 운영

○ (목적) 피해 입은 기업관련 상담 및 정부 지원 대책 안내

○ (기간) 2020년 2월 20일부터

○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공연예술분야 기업

○ (문의처) (재)예술경영지원센터

* (온라인상담) 예술경영지원센터 예술경영컨설팅
(https://www.gokams.or.kr:442/artsdb/03_consulting/online_list.asp)

* (전화상담) 02-708-2261, 02-708-2295

4. 민간 소규모 공연장 방역물품 지원

○ (지원대상)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

* 공연법 제9조에 따라 공연장 소재 관할 도·시·군·구 등에 **등록된 공연장**으로서 **등록증 상 객석수가 300석 미만이며 운영형태가 민간으로 분류된 공연장**

○ (지원사항)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 소독안내문, 초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

○ (지원계획) 2020년 2월 18일 손세정제, 시설 소독약제 및 분무기는 보급 완료, 미립자 분사기(약제포함)는 2월 24일부터 보급

* 별도 신청 없이 지원대상(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하여 전수지원

○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공연장안전지원센터

- 웹사이트 : www.stagesafety.or.kr / 대표전화 : 02-860-1177

※ 300석 미만 민간 공연장에 대한 방역물품 지원관련 일체의 문의는 공연장안전지원센터로 직접 연락

5. 관광진흥개발기금 신용보증부 운영자금 특별융자

○ **(배경)**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행업, 숙박업 등 관광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 경영 안정화 지원 필요

○ **(지원규모)** 운영자금 500억 원

○ **(지원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1~8등급 관광사업체

* 여행업 등 34개 업종(관광지원서비스업·관광공연장업 포함)

○ **(융자금리) 1%**(변동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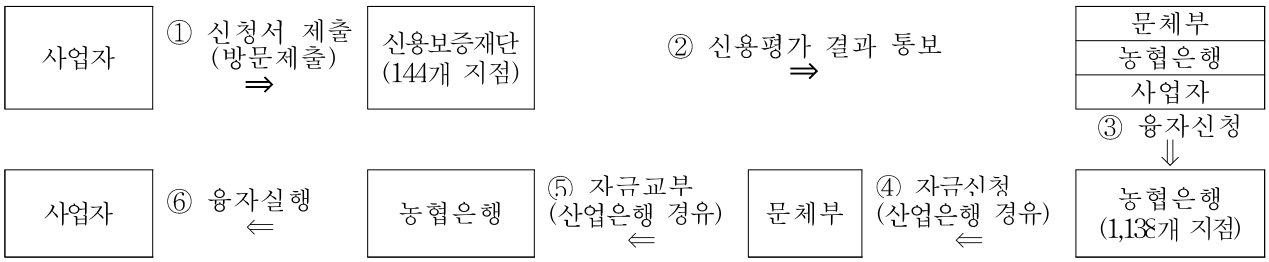
* 기준금리에서 0.75%p 차감에서 1.25%p차감

○ **(지원한도) 최대 2억 원**

○ **(상환기간) 3년 거치 3년 분할상환**

* 기존 5년(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6년(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1년 연장

○ **(지원 절차)**



○ **(신청서류 접수기간)** '20. 2. 19(수) ~ '20. 11. 30(월) *방문접수

○ **(신청서류 접수처)** 지역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콜센터1588-7365

[☏ 지역신용보증재단 본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1577-6119	부산	051-860-6600
대구	053-560-6300	인천	1577-3790
광주	062-950-0011	대전	042-380-3800
울산	052-289-2300	경기	1577-5900
강원	033-260-0001	충북	043-249-5700
충남	041-530-3800	전북	063-230-3333
전남	061-729-0600	경북	054-474-7100
경남	1644-2900	* 관할 영업점 확인용으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분야 관련 3개 업종 관련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1. 관광공연장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거 관광공연장업을 운영 중인 자

※ 관광공연장업 : 관광객을 위하여 적합한 공연시설을 갖추고 공연물을 공연하면서 관광객에게 식사와 주류를 판매하는 업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사업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2. 관광사진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사진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3. 관광지원서비스업

○ 신청자격

- 「관광진흥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관광지원서비스업을 운영 중인 자

○ 신청서류

- 융자신청서,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재무제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 주민등록등본, 부동산등기부등본, 금융거래확인서

※ <관광지원서비스업> 이란?
[참고자료]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367
(관광지원서비스업의 정의)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자 등을 위하여 사업이나 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으로서 **'관광산업 특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6호타목)

* 관광산업의 종합적 성격을 고려하여 통계청장의 승인(통계법 제22조제2항)을 받아 관광산업 특수분류를 제정, 관광산업의 범위 등을 측정하는데에 활용 중임

(관광지원서비스업 지정기준)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① 총매출액 중 관광객 또는 관광사업체와의 거래로 인한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
② 관광지, 관광단지 내에서 영업,
③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사업체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지정·인증·선정한 사업체

3 예정

□ 소극장 공연기획 및 제작비 지원

○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지원

□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 지원

○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

○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 2020년 4월 21(월) 기준, 각 지원관련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관련 정보가 전달되면 바로 공지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 :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 3. 18일자, 3.19일자)

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쪽(붙임 1쪽 포함)
배포일시	2020. 3. 18.(수)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문화예술정책실 문화기반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담당과장	과장 윤태욱(044-203-2731) 과장 최 진(044-203-2641) 단장 이상무(044-203-2341)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직(044-203-2734) 사무관 이광윤(044-203-2638) 사무관 조은경(044-203-2347)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 4월 5일까지 공연장 5곳, 박물관·미술관·도서관 24곳 휴관, 7개 국립예술단체 공연 중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국립중앙극장 등 5개 국립공연기관*과 국립중앙박물관 등 문체부 소속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의 휴관 기간을 추가 2주간('20. 3. 23.~4. 5.) 연장하고, 국립극단 등 7개 국립예술단체***의 공연도 2주간('20. 3. 23.~ 4. 5.) 추가로 중단한다.

* 5개 국립공연기관: 국립중앙극장, 국립국악원(서울 본원과 부산, 진도, 남원 등 3개 지방국악원 포함), 정동극장, 명동예술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 24개 박물관·미술관·도서관: 국립중앙박물관, 지방박물관 13개(경주, 광주, 전주, 대구, 부여, 공주, 진주, 청주, 김해, 제주, 춘천, 나주, 익산),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4개(과천, 서울, 청주, 덕수궁), 국립중앙도서관 3개(서울, 세종, 어린이청소년)

*** 7개 국립예술단체: 국립극단, 국립발레단, 국립오페라단, 국립현대무용단, 국립합창단, 서울예술단,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23일 코로나19 경계경보의 '심각' 단계 격상에 따른 1~2차 휴관('20. 2. 25.~3. 22.) 조치 이후에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추가 휴관과 공연 중단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4월 6일(월) 이후의 국립문화예술시설의 재개관과 국립예술단체의 공연 재개 여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며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에는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먼저 공연 취소·연기에도 불구, 고정비용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극장에 대해 공연 기획·제작 등을 지원한다.

* 1개소당 최대 6천만 원씩 200개소 지원, 기획공연 제작경비·홍보비 등 지원

또한 공연 제작과 관람 계기를 창출해 공연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업계와 수요자의 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공연 제작비를 지원*해 공연 제작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코로나19의 확산 추이를 지켜보며 적절한 시기에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도 지원**해 위축되어 있는 공연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 규모 등에 따라 2천만 원~2억 원 차등 지원, 160개 단체

** 예매처별 1인당 8천 원 상당 관람 할인권 제공, 300만 명

붙임 감염병 예방수칙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 문화기반과 이광윤 사무관(☎ 044-203-2638),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조은경 사무관(☎ 044-203-234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설명자료	힘내라 대구경북 힘내라 대한민국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1쪽(붙임 없음)
배포일시	2020. 3. 19.(목)	담당부서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
담당과장	윤태욱(044-203-2731)	담 당 자	사무관 정인직(044-203-2734)

공연 관람료 할인권 지원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추진할 계획입니다

3월 18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업종·분야별 긴급 지원방안’ 중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에 대해 설명 드립니다.

이번 긴급 지원 방안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공연업계에 대해 새롭게 결정된 대책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객 대상 관람료 지원’은 어려움에 처한 공연업계의 회복 속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며, 향후 코로나19 확산이 진정된 직후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3월 18일 국립공연기관의 휴관 추가 연장(~4. 5.) 및 국립공연단체의 공연 중단 지속(~4. 5.) 결정*을 내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소규모 공연장에 소독·방역 용품 긴급지원, 수입을 상실한 예술인에 대한 긴급생활자금 융자 등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최우선으로 두며 공연업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3. 18. 문체부 보도자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국립문화예술시설 휴관 연장 및 공연업계 추가 지원 대책 마련’ 참고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공연전통예술과 정인직 사무관(☎ 044-203-2734)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마감

1.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융자 (3월)

○ (목적)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 ~ 3월 10일(마감)

○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코로나19 기간 동안 국내·외 행사, 공연이 취소되어 보수를 받지 못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 (지원조건) 기존 융자 대비 금리 1.2%, 지원한도 1천만원,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상환 등 우대 등 예정

○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38~9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인 융자 전용 누리집 : https://www.artloan.kr / e-mail : artloan@kawf.kr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코로나19 특별 융자 생활안정자금대출 (4월)

○ (목적) **'코로나19 예술인 특별 융자' 신설**, 공연 취소·연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예술인 긴급 지원

○ (신청기간) 2020년 4월 1일 ~ 4월 10일 18:00

* 4월 중순 심사승인 통보 및 4월 29일(수) 대출금 지급 예정

○ (대상)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유효기간 3개월 이상)
대한민국 국민으로 미성년이 아닌 사람
코로나19로 예술 활동이 취소, 연기된 예술인 또는 수입이 감소된 예술인

* '**예술활동증명'이란?**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를 위한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

법 상 예술을 '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임. 최근 일정 기간 동안의 예술 활동 혹은 예술 활동 수입 내용으로 신청 가능

○ **(대출종류)** 코로나19 특별 융자

○ **(대출한도)** 최고 1천만 원 이내

* 개인별 대출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승인

○ **(금리)** 연 1.2% (연체시 3% 가산한 4.2%)

○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 대표전화 : 02-3668-0238~9
- 예술인활동증명: https://www.kawfartist.kr/views/cms/hkor/cs/cs01/cs01002.jsp

* 예술활동증명 절차 : 신청완료→접수확인→행정심의(보완요청 등)→심의위원회 심의→결과안내

* 진행상황 확인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예술활동증명 - 신청내역

* 신청완료부터 승인까지 최소 4~7주 소요

- 예술인 융자 전용 누리집 : https://www.artloan.kr / e-mail : artloan@kawf.kr

2. 창작준비금 지원 - 창작 디딤돌

○ **(목적)**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활동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실질적으로 지원

○ **(신청기간)** 2020년 3월 2일(월) ~ 3월 20일(금)

○ **(대상)**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중 예술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원로 및 장애 예술인 포함),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가점 2점 부여

* 피해 예술인 : 확진·격리 등으로 활동 불가, 공연·계약 축소, 취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등

○ **(선정·지원규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총 12,000명 선정, 1인 3백만 원

○ **(문의처) (재)한국예술인복지재단**

- 웹사이트 : www.kawf.kr /대표전화 : 02-3668-0200
- 창작준비금지원-창작디딤돌 : http://www.kawf.kr/notice/sub01View.do?selIdx=12719

Ⅱ. 일반 지원제도

1.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대상 정책자금 융자

○ **(융자규모)** 4000억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의 **일시적 경영애로 해소와**
경영정상화에 소요되는 경비

○ **(지원대상)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기업**

▪ **지원대상**
① **코로나19 관련 피해기업**
② **코로나19 관련 피해 병·의원**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 **요건 : 매출액 10%이상 감소 기업**
* (비교시점) 직전분기와 직전전분기, 직전분기와 전년동분기,
신청전월과 전전월, 신청전월과 전년동월,
신청전 1개월과 전전1개월, 신청전 1개월과 전년동기간,
신청당월(추정)과 신청전월, 신청당월(추정)과 전년동월
※ 마스크 제조기업은 경영애로 요건(매출액 10% 감소) 예외 적용
※ 중국 내 최초 확진확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 **코로나19 피해기업이라도 중진공 융자공고 공통사항의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전 융자공고 확인 필요**

○ **(대출한도)** 기업당 연간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1/4분기 2.15%, 변동금리)

○ **(대출기간)** 5년 이내(거치기간 2년 이내 포함)

○ **(접수기간) '20.2.13(목)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접수**

○ **(예약방법)**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접속 ⇨ **자주 찾는 서비스** 메뉴 클릭 ⇨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 메뉴 클릭 ⇨ **'코로나 피해기업'** 예약창구 선택 ⇨ **신청사**

유 선택

○ (지원절차)

사전상담	■ 신청기업 → 지역본(지)부 방문 사전상담 * 코로나19 관련 사전상담 시 유선상담 가능
▼	
온라인신청	■ 신청기업 → 정책자금 신청서 온라인 제출
▼	
실태조사	■ 중진공 → 신청기업
▼	
지원결정	■ 중진공 → 신청기업
▼	
자금대출	■ 중진공 → 신청기업 : 대출약정 후 자금대출

○ (융자방식) 기업평가를 통해 융자대상 기업 선정 후 직접대출

○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 관련 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지사항
http://www.kosmes.or.kr/sbc/SH/NTS/SHNTS001F0.do?seqNo=6105886

* 관련 정보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국 32개 지역본지부
http://kosmes.or.kr/sbc/SH/SIT/SHSIT010M0.do

2. [기획재정부]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 관련정보 : 기획재정부 – 코로나19 경제지원 - 비상경제회의
http://www.moef.go.kr/sns/2020/emgncEcnmyMtg.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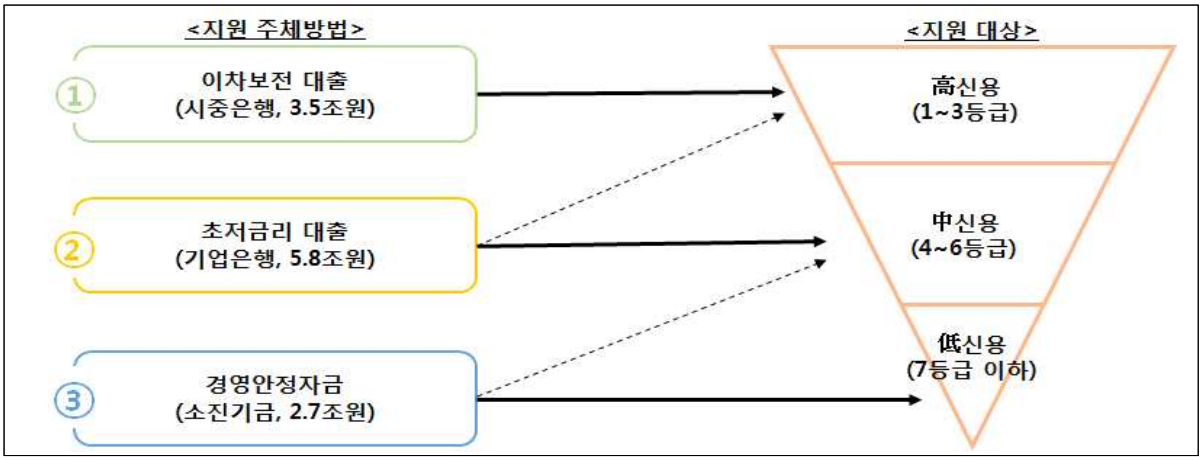
□ 지난 3.24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금융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과 신청방법 등을 안내** 드립니다. (☞별첨 : 상세자료)

		지원기관	규모	신청 창구
소상공인 지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12.0조원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진흥공단	2.7조원	소진공 전국 지역센터
	초저금리 대출	기업은행	5.8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시중은행 (14개)	3.5조원	14개 시중은행 영업점
	신속·전액보증 프로그램	신보, 기보 지역신보	3.0조원	신보, 기보 지역신보 영업점
중소·중견기업 지원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대출	산업은행	5.0조원	산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10.0조원	기업은행 영업점
	코로나19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8.7조원	수출입은행 영업점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보	5.4조원	신보 영업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	P-CBO	신보	8.4조원	
	코로나19 P-CBO	신보	6.7조원 (1.68조원 우선 지원)	(중견·대기업) 신보 유동화보증센터
	주력산업 등 P-CBO	신보	1.7조원	(중소기업) 신보 전국 영업점
	회사채·CP 차환발행 지원	산업은행 기업은행	3.9조원	-

별첨 **4.1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정책금융 프로그램 안내**

1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 금융지원패키지 내 프로그램(이차보전·초저금리·경영안정자금) 간에는 중복수급을 받을 수 없음(부정한 방법으로 중복수급시 불이익 받을 수 있음)

가. 저신용자 :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

* 관련정보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지사항

https://www.semas.or.kr/web/board/webBoardView.kmdc?bCd=1&schCat=&rlIdx=&schCon=&schStr=&page=2&b_idx=32354&pNm=BOA0101&eventMode=

◇ 지원대상 : 4등급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1,000만원 (보증不要)
◇ 금리 : 1.5% (최대 5년)

1 신용등급 4등급 ~ 10등급(개인신용등급 기준)만 신청 가능
2 또한, 출생연도 끝자리 별로 신청 가능 날짜가 다름(4.1일부터)

*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1,3,5,7,9)인 사람 → 홀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0,2,4,6,8)인 사람 → 짝수날짜에만 신청 가능

3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계좌(택1) 보유 필요

☎ 문의사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62개 지역센터
· 대표번호 : 042-363-7130

나. 중신용자 : 기업은행「초저금리 대출」

◇ **지원대상 : 소상공인·자영업자**(통상 '개인사업자')
◇ **한도 : 음식, 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3천만원**
도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 1억원
◇ **금리 : 1.5%** (초저금리 적용기간 : 최대 3년간)

(1) **초저금리 대출을 최초로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 **4.1일부터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신보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3~5일**내에 **최대 3천만원까지 자금**을 수령 가능(**4월 하순까지는 2~3주 소요**)

□ **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최대 1억원**까지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으나 **신·기보 지점**을 **방문**하여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자금 수령시 까지 2~4주가 소요**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이미 신청한 소상공인·자영업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하였지만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중에서 ❶**신용이 1등급에서 3등급 사이**이고 ❷**대출신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4.6일부터 안내문자*** 등에 따라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기업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

* 소진공 자금의 **신청순서**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

< 초저금리 대출 신청서류 >

발급처	서류명
고객	신분증 사본, 법인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세무서 (인터넷발급 포함) (www.hometax.go.kr)	**매출액 확인자료**(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명원**(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납세증명서** (국세, 지방세)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전 금융기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4대 보험료 납부증명서**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콜센터 1588-2588

다. 고신용자 : 시중은행 이차보전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
◇ 한도 : 3,000만원 (보증不要, 신용대출)
◇ 금리 : 1.5% (최대 1년)

1 기업신용등급 1 ~ 3등급(은행상담 후 확인 가능)만 이용 가능

※ 은행마다 신용등급 평가결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20.12.31일까지만 신청 가능하며, 초저금리 혜택은 최대 1년

☎ 문의사항 : 이차보전 프로그램 취급 14개 시중은행

은행명	전화번호	은행명	전화번호
국 민	☎ 1588-9999	경 남	☎ 1600-8585
신 한	☎ 1577-8000	대 구	☎ 1566-5050
우 리	☎ 1588-5000	부 산	☎ 1588-6200
하 나	☎ 1588-1111	광 주	☎ 1588-3388
농 협	☎ 1661-3000	제 주	☎ 1588-0079
수 협	☎ 1588-1515	전 북	☎ 1588-4477
씨 티	☎ 1588-7000	SC제일	☎ 1588-1599
은행연합회	☎ 3705-5000		

2 신속 · 전액보증 프로그램

◇ 지원대상 :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한도 : 5,000만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1 4.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中 한 곳에서만 신청

2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 문의사항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재단

기관명	전화번호	기관명	전화번호
신용보증기금	☎ 1588-6565	지역신용보증재단	☎ 1588-7365
기술보증기금	☎ 1544-1120		

2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가.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중견기업
(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중견기업 최대 100억원, 중소기업 최대 5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6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1500)

나.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프로그램 (기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자금용도 :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

※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5~1.0%p 금리 우대

□ 4.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 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소재 · 부품 · 장비 영위기업	· 최대 0.5%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	· 최대 0.5%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2.0조원
중소벤처기업	· 최대 0.5%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6조원
지방 중소기업	· 최대 1.0%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 담보인정비율 상향	1.0조원
혁신성장 영위기업	· 최대 1.0%p 금리우대 · 대출한도 확대(상위 신용등급 한도 부여)	1.0조원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코로나19 특례보증 등)	· 최대 1.0%p 금리우대	2.4조원

➡ 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기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2588/1566-2566)

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일부 포함)

◇ 자금용도 : 수출입·해외진출 사업 지원

◇ 우대조건 : 0.3%~0.9%p 금리 우대
0.15~0.25%p 보증료 우대

□ 4.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등 신청접수·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운영자금 지원	• 수출입·해외진출 기업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긴급 경영자금 지원	• 수출입계약·실적없거나 대출 한도 소진기업	• 평년매출액 일정비율 한도 • 금리우대 : 중소 0.5%p 중견 0.3%p	2.0조원
수출실적 기반자금	• 코로나19 피해기업 및 혁신성장·소부장 부문	• 기업별 과거 수출실적의 80% 지원	2.0조원
무등급 수출기업 지원	• 기존 미거래 외감기업	• 정성평가 생략 • 금리우대 : 최대 0.9%p	0.2조원
수출입·해외진출 보증	• 수출입 또는 해외진출 기업	• 보증료 우대 : (중소)0.25%p (중견)0.15%p	2.5조원

➡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reaexim.g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수출입은행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3779-6114)

라. 중소기업 활력보강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

◇ 지원대상 :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우대조건 : **보증비율**(90% 이상), **보증료율**(0.2%p 차감),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 3.31일부터 중소기업 신청접수 · 지원 가능

지원대상	우대 조건	규 모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	• 보증료율 0.2%p 차감 • 보증비율 상향 적용	2.5조원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	• 보증료율 0.2%p 차감 • 보증비율 상향 적용	1조원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	• 대상기업 전액 만기연장 • 일정요건 충족시 보증료율 0.2%p 차감	1.9조원

➡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홈페이지(www.kodit.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문의사항 : 신보 영업점 또는 고객센터(1588-6565)

3. [신용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경기침체가 현실화 됨에 따라 조기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 유동성 지원

○ **(시행기간) 2020. 2. 13. ~ 한도소진 시 까지**

○ **(신청대상)**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가동(영업)중으로,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

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영업 피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을 영위하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정책자금을 별도로 배정받은 기업

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경영애로(매출감소 확인)가 있는 기업

업종	코드 (표준산업분류)	비고
제조업	10~34	(재)보증제한 업종 제외
여행사 및 기타 여행 보조 서비스업	75210, 75290	
도소매업	45, 46, 47	
음식점업등	56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551	
운송업	49, 5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교육관련 서비스업	**85, 90, 91**	
기타 개인서비스업	96	

○ **(대출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 **(보증한도)** 본건 최대 7천만원

○ **(대출금리)** 약 3% 이내(기준금리에 따라 변동 가능)

○ **(보증기간)** 최대 5년 이내(1년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 **(문의처)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대표번호 : 1588-7365 / 웹사이트 www.koreg.or.kr

* 관련정보 :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지사항

https://www.koreg.or.kr:444/boardCnts/view.do?m=0301&action=view&boardID=3&boar

dSeq=34413&viewBoardID=3&lev=0&s=koreg

4. [기술보증재단]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목적)**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등으로 급격한 소비심리 위축

○ **(시행시기)** 2020. 2. 13.(목)부터 예정

○ **(도입배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중소기업 지원

○ **(지원대상)** 여행 · 관광 · 운송 · 공연 등 영위기업 및 최근 1년 이내 對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기존보증)** 원칙적으로 1년간 전액만기 연장

* 對중국 수출·입 실적보유기업은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20.2.6.시행)의 영업점 선정심사 위원회를 통해 연장

* "경영애로 중소기업 보증 만기연장 잠정조치"에서 정한 만기연장 대상 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심사 없이 연장가능

○ **(신규보증)**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비율 95%, 1.0% 고정보증료율
- 연체대출금 보유사실 심사완화

○ **(문의처) 기술보증기금**

- 대표번호 : 1544-1120 / 웹사이트 www.kibo.or.kr/

* 관련정보 : 기술보증기금 – 공지사항

https://www.kibo.or.kr:444/src/about/kbe800_view.asp?num=2060&page=1

5. [국세청] 코로나19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등 세정지원

-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 **(지원분야 및 대상)** 확진환자, 격리 중인자, 확진환자 발생·경유 사업장, 우한 귀국교민 수용 인근 사업장, 중국교역 중소기업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음식·숙박업, 여객운송업, 병·의원, 도·소매업 등(소비성 유흥업 등 제외)을 영위하는 납세자로서,
  ① 확진환자·격리 중인자(업종무관)
  ② 확진환자 발생·방문지역 및 우한 귀국교민 수용지역* 납세자
  * 경찰인재개발원(아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진천) 인근 상권지역
  ③ 중국교역 중소기업(수출기업, 부품·원자재 수입기업)
  ④ 중국 현지 지사·공장 운영, 기타 현지 생산중단으로 차질이 발생한 국내 생산업체 등 지원이 필요한 납세자

○ **(지원내용)**

- 법인세(3월 확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 징수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유예(최대 1년)
- 환급금 조기지급
- 세무조사 착수유예(연기·중지 포함) 등

ㅇ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온라인), 우편, 방문 접수

· 온라인 : 홈택스(www.hometax.go.kr)

· 접수처 : 관할 세무서

세정지원센터	연락처
서울청 징세과	02-2114-2502
중부청 징세과	031-888-4342
부산청 징세과	051-750-7502
인천청 징세과	032-718-6502
대전청 징세과	042-615-2502
광주청 징세과	062-236-7502
대구청 징세과	053-661-7502

- 조사 연기·중지 신청 : 세무조사 사전통지 중이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조사관서(조사팀)에 '세무조사 연기(또는 중지)신청서'를 제출

* 관련정보 : 국세청 공지사항
https://www.nts.go.kr/news/news_05.asp?minfoKey=MINF5320080211205338&type=V&mbsinfoKey=MBS20200207084633800&searchPage=&isSearch=&sYear=1999&sMonth=3&eYear=2020&eMonth=2&searchTitle=MBSINFO_SUBJECT&searchSub=

6. [중기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CV) 관련 소상공인 지원 종합안내

* 관련정보 : 중소벤처기업부 공지사항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1&bcIdx=1016958

◇ 신종CV 피해 소상공인 종합상담 연락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대출	■ (명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규모) 2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융자지원, 대출기간 5년 (2년거치 3년상환)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042-363-7130	2.13
	■ (명칭) 미소금융 창업·운영자금 ■ (규모) 4,400억원 ■ (대상) 저신용(6등급이하)·저소득(차상위계층이하) 영세자영업자 대상 ■ (내용) 1인당 2천만원 한도, 최장 5년, 금리 4.5% 이내	서민금융 진흥원	1397	2.11
	■ (명칭) 미소금융 전통시장 상인대출 ■ (규모) 500억원→550억원(50억원 확대) ■ (대상) 전통시장(전국 318개)의 영세상인 * 기초 지자체 추천을 받아 서민금융진흥원과 지원사업 약정을 체결한 전통시장 ■ (내용) 1인당 1천만원 한도, 만기 최장 2년, 금리 4.5% 이내(상인회 자율 결정)	서민금융 진흥원	1397	2.11
	■ (명칭) 특별자금지원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 (내용) 최대 5억원, 1년(3년까지 연장 가능), 최대 1.0%p 금리감면	기업은행	1588-2588	2.10
보증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소상공인 ■ (내용) 한도 7천만원 보증지원(5년 이내), 보증비율상향(85%→100%), 보증료율 0.8% 적용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2.13
	■ (명칭) 특례보증 프로그램 ■ (규모) 1,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기업 ■ (내용) 기업 당 3억원 이내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1.0% 적용	기술보증기금	1544-1120	2.13
	■ (명칭) 우대보증 프로그램 ■ (규모) 3,000억원 ■ (대상) 신종 CV 피해 중소기업 ■ (내용) 우대 보증 지원, 보증비율 상향(85%→95%), 보증료율 0.2%p 차감, 심사절차 간소화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6

구분	지원내용	주관기관	연락처	시행일
국세	■ (대상) 신종 CV 피해 납세자*(자영업자 등)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내용) ① 법인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연장(최대 9개월) ② 징수(최대 9개월)체납처분(최장 1년) 집행 유예 ③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 ④ 신종 CV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운영	국세청 징세과 / 관할 세무서	국번없이 126 (3번→2번)	2.5
지방세	■ (대상) 신종 CV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 (내용) ①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신고·납부기한 연장(6개월 이내, 6개월 재연장 가능) ②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③ 세무조사 유예 ④ 지방세 감면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관할 지자체 세정과 (별첨)	2.5
관세	■ (대상) 중국 내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 (내용) ① 납기연장·분할납부(최대 1년) ②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등 유예 ③ 애로해소센터 운영	관세청 심사정책과	042-481-7863 국번없이 125 (20번→2번)	2.6
카드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연매출 5억원 이하) 등에 대한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등 추진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등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금융위 중소금융과	02-2100-2983	2.10

▷ 마스크 수급안정화 지원(중기부 판로정책과 042-481-4483)
- 공영홈쇼핑 방송, 온라인(앱, 홈페이지 등)을 통한 판매 추진
* 방송 횟수 및 일정 : 2회 방송(2.17/2.19), 판매물량 : ① 2.17일(손소독제 4천세트, 2만개), ② 2.19일(마스크 3,750세트, 15만개)

▷ 불공정거래행위 감시(시장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시)
: 금융위(자본시장조사단 02-2100-2543), 금감원(자본시장조사국 조사1팀 02-3145-5635)

▷ 금융애로상담(「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內 전담창구 운영(2.7))
: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 6번)

▷ 위생·의료용품 수급지원(마스크 및 손소독제 국외 대량반출 차단, 해외 수입 위생·의료용품 신속통관 지원)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 원부자재 신속 통관 지원(24시간 통관지원체제 가동, 검사선별 및 심사 최소화)
: 관세청(통관기획과 042-481-7814)

참고 중기부 지방청 연락처

지방청	연락처	주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2-2110-6343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1-601-5138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53-659-2263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62-360-9161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31-201-6932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032-450-1145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82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과	042-865-6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2-210-0046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33-260-1621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43-230-5321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팀	063-210-643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역혁신과	055-268-2549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참고 전국 지역센터 및 관할구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표전화(1357)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경인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110번지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2 (02)839-87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양평동)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서초동)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미아동), 제이은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강원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인제군,양구군,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강원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대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강원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201호	원주시,횡성군,평창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별관 1층	삼척시,동해시,태백시,정선군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부산 북구 기찰로 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90(연산동), 프라임지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부산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해운대구,기장군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부산 중구 중앙대로 63(중앙동3가),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사하구,동구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울산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 마산시,진해시),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경남 진주시 촉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삼천군,의령군,남해군,하동군,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경남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경남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동현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경상남도 양산시 다방동 525-6번지 양산비즈니스센터 3층	양산시, 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3층	중구,남구,달서구,달성군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대구 북구 옻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동구,서구,북구,수성구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경북 안동시 경동로 661,(남부동) 남부빌딩 2층	안동시,영주시,문경시,의성군,봉화군,예천군,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신평동)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상주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경북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경북 경주시 북문로 125-5 3층 (성동동),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영천시,청도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광역시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광주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남악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內	목포시,무안군,해남군,강진군,영암군,장흥군,신안군,완도군,진도군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85(빛가람동),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영광군,장성군,담양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55 여수상공회의소 4층	여수시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보성군,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061)741-4159		고흥군,곡성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전북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전북 익산시 인북로 187(남중동),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전북 군산시 중앙로 124 홍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전북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고창군,부안군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경기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56-5302 (031)663-5302	경기 평택시 지산동 756-84(송탄로) 송탄농협 중앙지점 3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경기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경기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경기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하남시,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경기 의정부시 신흥로 251, (의정부동)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남양주시, 구리시,포천시,양주시,연천군, 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경기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1층	안산시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인천 남구 인주대로 416(주안동), 삼원빌딩 2층	연수구,남구,남동구,중구,동구, 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인천 부평구 부흥로 337(부흥오거리) 신한은행건물 5층	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대전 유성구 가정북로 96(장동), 대전경제통상진흥원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대전 중구 중앙로 76 영민빌딩 3층 303호	중구,동구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불당동)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충남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취암동), 문경빌딩 3층 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서천군, 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충남 서산시 고운로 177(동문동), 서산시청 2호 서산시	서산시,태안군,당진군,홍성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충남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청양군,보령시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충북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충북 충주시 으뜸로 21(금릉동),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충청북도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괴산군,증평군,진천군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화산동), 문화회관 2층 제천시	제천시,단양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문정리), 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03호	세종시

참고 **지방세 지원 관련 시·도 연락처**

연번	시·도	부서명	연락처	팩스번호
1	서울특별시	세무과	02-2133-3396	02-2133-1034
2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	051-888-2134	051-888-2129
3	대구광역시	세정담당관	053-803-2505	053-220-2490
4	인천광역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2542	032-440-8702
5	광주광역시	세정담당관	062-613-2522	062-613-2529
6	대전광역시	세정과	042-270-4243	042-270-4239
7	울산광역시	세정담당관	052-229-2624	052-229-2619
8	세종특별자치시	세정담당관	044-300-3512	044-300-3510
9	경기도	세정과	031-8008-4188	031-8008-4189
		조세정의과	031-8008-2468	031-8008-2289
10	강원도	세정과	033-249-2881	033-249-4081
11	충청북도	세정과	043-220-2755	043-220-2759
12	충청남도	세정과	041-635-2341	041-635-3047
13	전라북도	세정과	063-280-2315	063-280-2319
14	전라남도	세정과	061-286-3647	061-286-4759
15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054-880-2211	054-880-2190
16	경상남도	세정과	055-211-3710	055-211-3719
17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064-710-6885	064-710-6889

7. [금융위원회] 코로나19 관련 금융부문 지원 방안

* 관련정보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http://www.fsc.go.kr/info/ntc_news_view.jsp?menu=7210100&bbsid=BBS0030&no=33678

2.7~12일 총 601건 799.2억원 금융지원

1. (금융위) 코로나19 금융부문 대응방안(총 2조원)

◇ 지원대상: 코로나19 직·간접 피해기업

1 신규자금 지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❶ 산은	최대 중소 50억원, 중견 70억원	3,000억
❷ 기은	최대 5억원, 최대 1.0%p 금리↓	1,000억
❸ 신보	보증비율↑(85%→90%), 보증료율 최대 0.2%p↓	3,000억
❹ 수은	최대 중견 0.3%p, 중소 0.5%p 금리↓	1조
❺ 중진공	최대 10억원	250억
❻ 기보	최대 3억원, 보증비율↑(85%→95%), 보증료율 1.0% 고정	1,050억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 산·기은, 수은, 신·기보, 중진공의 대출·보증 만기연장(최장 1년)

3 수출입 금융지원

○ (수출) 매입외환 입금 지연시 가산금리 감면, 부도등록 유예(1개월)

○ (수입) 수입신용장 만기 연장(최장 1년)

4 정책금융 조기집행: 약 230조원 조기 집행

5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❼ 소진공	최대7천만원	200억
❽ 지신보	최대 7천만원, 100%보증, 보증료율↓(1.0%→0/8%)	1,000억
❾ 기은	최대 1억원, 1.5% 초저금리	1.2조
❿ 마소금융	최대 2천만원, 4.5% 금리	4,400억

2. (중기부) 「중소·소상공인 지원방안」 中 금융지원방안

1. 중소기업 분야

1 신규자금 지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❺ 중진공	최대 10억원, 0.5%p 금리↓	250억
❻ 기보	최대 3억원, 보증비율 ↑(85%→95%), 보증료율 1.0% 고정	1,050억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 (만기연장) 1년, (상환유예) 최장 9개월

3 매출채권 보험 활용 거래안정성 보완

○ 인수규모 확대(2조원→2.2조원), 가입보험료 인하 (피해업종 대상 10%↓), 보험금 신속지급(15일→10일)

2. 소상공인 분야

1 신규자금 지원

지원기관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❼ 소진공	최대 7천만원, 1.75% 고정금리	200억
❽ 지신보	최대 7천만원, 100%보증, 보증료율↓(1.0%→0/8%),	1,000억

2 기존 금융계약 연장

○ (만기연장) 1년 (소진공, 지신보)

○ (지자체 협력) 재보증비율 상향(50%→60%)

○ (중기중앙회) 노란우산공제 대출금리 한시적 인하 (3.4%→2.9%)

3. 코로나19 범용지원 프로그램(총 14.7조원)

1 중소·중견기업 (9.9조원)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설비투자 붐업 프로그램(산·기·수은) * 최저 1.5% 수준	산은 2조원 기은 2조원 수은 0.5조원
산업구조고도화 지원프로그램(산·기은) * 최대 0.7%p 금리 감면	산은 2조원 기은 1조원
환경·안전투자(산·기은) * 1.0%p 금리 감면	산은 0.75조원 기은 0.75조원
시설투자 특별은렌딩 프로그램(산은) * 최대 0.45%p 금리 감면	0.5조원
부품소재기업 혁신지원대출(기은) * 최대 1.0%p 금리 감면	0.2조원
서비스산업 지원자금(산은) * 운영자금, 최대 0.5%p 금리 감면	0.2조원

2 소상공인·자영업자 (0.9조원)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소상공인 특별지원대출(기은) * 최대 1.0%p 금리 감면	0.5조원
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신·기보) * 보증료 0.3~0.5%p차감, 보증비율 95~100%	0.4조원

3 투자 프로그램 (3.9조원)

지원내용	지원한도(원)
성장지원펀드(산은)	2.5조원
소부장 전용펀드(산은)	0.4조원
주력산업 P-CBO(신보)	1.0조원

8. [국민연금]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지원

[관련정보] https://www.nps.or.kr/jsppage/news/pr_news/pr_news_01.jsp

□ (사업개요) 코로나19 확진 환자 발생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하여 정부의 조치에 협조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 비용 지원

□ (지원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격리된* 자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보건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된 자 또는 입원치료통지서를 받고 입원한 자

** 국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는 제외

□ (지원금액) 1일 과세대상급여액(최대 13만원) × 유급휴가 기간

○ (지원기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13만원) 적용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과세대상급여액 ÷ 26일

○ (유급휴가 기간) 입원 또는 격리기간* 중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별도의 유급휴가를 제공한 일수

* 격리(입원치료)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격리해제(퇴원) 된 날까지의 기간

□ (신청방법)

○ (신청자)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

○ (접수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붙임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참조)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별도 공지시까지

○ (신청서류)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1부.

②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입원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입원치료 통지서
- 격리자 :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격리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격리통지서

③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④ 유급휴가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1부.

⑤ 임금을 확인 할 수 있는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1부.

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서식 제1호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⑦ 사업장 통장사본 1부

- 개인사업자는 사용주 통장, 법인은 법인 통장

붙임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소 및 연락처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서울	서울북부 지역본부	서대문구, 마포구	02-2176-9821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36, 9층, 13층 충정로사옥 (충정로3가)
	종로중구	중구, 종로구	02-397-9590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15층 (충무로3가)
	동대문중랑	동대문구, 중랑구	02-920-0610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6, 6층 경복빌딩 (신설동)
	성북강북	성북구, 강북구	02-901-2910	서울 강북구 도봉로 314, 6-7층 삼성화재빌딩 (번동)
	도봉노원	도봉구, 노원구	02-2211-2850	서울 노원구 노해로 502, 8층 KT노원지사빌딩 (상계동)
	성동광진	성동구, 광진구	02-3408-6661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563, 3층 대한제지사옥빌딩 (광장동)
	송파	송파구	02-3433-583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13, 6층 국민연금공단 (신천동)
	강동하남	강동구, 하남시	02-480-8860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102, 8층 강동웨딩KDW (성내동)
	서울남부 지역본부	강남구(신사동, 논현동, 압구정동, 청담동, 삼성동)	02-3416-6040 02-3416-6036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28, 국민연금강남회관(논현동)
	강남역삼	강남구 (서울남부지역본부 관할구역 제외)	02-2186-405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6, 8층 (역삼동, 카이트타워)
	서초	서초구	02-3415-0950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3층 엘타워(양재동)
	관악	관악구	02-6934-2050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926, 4층 경동제약빌딩 (봉천동)
	구로금천	구로구, 금천구	02-2085-1459	서울 금천구 벚꽃로 286, 2층 리더스타워오피스텔 (가산동)
	영등포	영등포구	02-2629-2372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543, 5층 동양타워빌딩 (당산동4가)
	강서	강서구	02-2086-7131	서울 강서구 강서로 463, 3층 새싹타워 (마곡동)
	은평	은평구	02-350-5506	서울 은평구 통일로 742, 3층 한화생명빌딩 (불광동)
	양천	양천구	02-6345-9010	서울 양천구 목동동로 81, 9층 해누리타운 (신정동)
	용산	용산구	02-6220-2202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92, 4층 LS용산타워 (한강로2가)
	동작	동작구	02-6935-8401	서울 동작구 노량진로 100, 8층 기독교 TV 멀티미디어센터 (노량진동)
부산	부 산 지역본부	부산진구, 연제구	051-797-7070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4층 국민연금공단부산회관빌딩 (연산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중부산	중구, 동구, 영도구	051-660-3230	부산 중구 충장대로 7, 3층 교보생명빌딩 교보생명보험(주) 중앙동사옥 (중앙동4가)
	서부산	사하구, 서구	051-290-3546	부산 사하구 낙동남로 1427, 10층 삼성전자빌딩 (하단동)
	북부산	강서구, 북구	051-603-1150	부산 북구 기찰로 12, 4층 이수타워 (덕천동)
	동래금정	동래구, 금정구	051-550-7519	부산 동래구 명륜로 82(수안동)
	남부산	남구, 수영구	051-793-1011	부산 수영구 수영로 688, 1, 2층 국민연금공단수영사옥 (광안동)
	동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051-610-6360	부산 해운대구 센텀남대로 50, 7층 센텀임페리얼타워 (우동)
	부산사상	사상구	051-792-5331	부산 사상구 사상로181번길 10, 2층 하이에어코리아부산사무소 (괘법동)
대구	대 구 지역본부	달서구	053-589-4560	대구 달서구 성서로 419, 2층 국민연금대구회관건물 (이곡동)
	서대구	서구, 북구	053-380-3040	대구 북구 옥산로 111 6층(칠성동 2가, 대구은행제2본점)
	동대구	동구	053-430-7891	대구 동구 동촌로 1, 5층 동대구우체국 (입석동)
	대구수성	수성구, 중구, 남구	053-750-9192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2397, 11층 KB손해보험대구빌딩 (범어동)
	대 구 달성고령	달성군, 고령군	053-470-1511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동로 13, 1,2층 KT달성빌딩 (현풍면)
인천	남동연수	남동구, 연수구	032-451-0811	인천 남동구 성말로 20, 3층 국민연금인천회관 (구월동)
	서인천	서구	032-560-0501	인천 서구 서곶로 284, 3층 새터빌딩 (심곡동)
	부평계양	부평구, 계양구	032-500-8121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75, 15층 한화생명빌딩 (부평동)
	남인천	남구, 중구, 동구, 옹진군	032-770-3502	인천 남구 경인로 351, 7층 한화생명빌딩 (주안동)
	김포강화	김포시, 강화군	031-8048-1313	경기 김포시 김포한강1로 81, 2층 (장기동)
광주	광 주 지역본부	서구, 광산구	062-958-2040	광주 광산구 무진대로 251, 1층 국민연금공단광주사옥 (우산동)
	동광주	동구, 남구, 화순군, 곡성군	062-230-0710	광주 동구 금남로 154-1, 8층 아모레퍼시픽빌딩 (금남로5가)
	북광주	북구, 담양군, 장성군	062-520-8160	광주 북구 무등로 239, 10층 한국시멘트빌딩 (중흥동)
대전	대 전 지역본부	서구, 논산시, 계룡시	042-480-4881	대전 서구 문정로 6, 4층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 (탄방동)
	동대전	중구, 동구, 금산군	042-720-4030	대전 중구 중앙로 119, 14층 삼성생명빌딩 (선화동)
	북대전	대덕구, 유성구	042-670-1020	대전 대덕구 한밭대로 1027, 4층 우성빌딩 (오정동)
울산	남울산	남구, 울주군	052-226-2132	울산 남구 중앙로 179, 4층 한화생명빌딩 (신정동)
	동울산	중구, 동구, 북구	052-290-6131	울산 중구 번영로 470, 5층 중울산새마을금고빌딩 (반구동)
세종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044-715-1611	세종 한누리대로 486, 3층 NH농협세종통합센터 (어진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경기	경 인 지역본부	수원시 권선구, 영통구	031-229-4082	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307번길 19, 3층,4층,9층 국민연금공단 수원사옥 (인계동)
	안양과천	안양시, 과천시	031-420-2001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80, 20층 지스퀘어 (호계동)
	성남	성남시	031-778-0301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4층 코리아디자인센터 (야탑동)
	이천여주	이천시, 여주시	031-630-7901	경기 이천시 이섭대천로 1203, 5층 하나빌딩 (중리동)
	평택안성	평택시, 안성시	031-659-0821	경기 평택시 평택2로 34, 3층, 5층 삼성생명 (평택동)
	안산	안산시	031-481-7740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259, 2층 삼성화재안산사옥 (고잔동)
	광명	광명시	02-2610-2820	경기 광명시 철산로 5, 3층 융창빌딩 (철산동)
	부천	부천시	032-610-2362	경기 부천시 신흥로 179, 12층 한화생명빌딩 (중동)
	고양일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서구	031-920-5451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3층 KT프라자 (마두동)
	고양덕양	고양시 덕양구	031-927-3211	경기 고양시 덕양구 원흥4로 7, 5층 (원흥동)
	의정부	의정부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031-828-3647	경기 의정부시 시민로 62, 2층 삼성생명빌딩 (의정부동)
	구리남양주	남양주시, 구리시, 양평군	031-550-5823	경기 구리시 경춘로 158, 14층 한화생명빌딩 (교문동)
	용인	용인시	031-288-1398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명지로16번길 9-21, 명지대입구방향 역삼동주민센터뒤 (역북동)
	화성오산	화성시, 오산시	031-229-6036	경기 화성시 병점2로 6, 5층 금강빌딩 (병점동)
	시흥	시흥시	031-488-2760	경기 시흥시 정왕대로 188, 5층 한국산업은행 (정왕동)
	군포의왕	군포시, 의왕시	031-390-8021	경기 군포시 산본로 404, 3층 대주빌딩 (산본동)
	파주	파주시, 개성공업지구	031-956-3611	경기 파주시 새꽃로 1, 3층 파주우체국 (금촌동)
	포천철원	포천시, 철원군	031-540-8049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5층 송우웰빙타운 (소흘읍)
	경기광주	광주시	031-8026-3030	경기 광주시 광주대로 214-1, 2층 정민빌딩 (송정동)
	북수원	수원시 장안구, 팔달구	031-8007-2202	경기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350번길 30, 2층 KT수원지사 빌딩 별관 (영화동)
강원	강릉	강릉시, 고성군, 속초시, 양양군	033-640-9310	강원 강릉시 경강로2224번길 12(포남동)
	춘천	춘천시, 화천군, 양구군, 가평군	033-259-7760	강원 춘천시 남춘로 20, 국민연금춘천회관 5,6층 (퇴계동)
	원주	원주시, 평창군, 영월군	033-749-8430	강원 원주시 시청로 32 (무실동)
강원	삼척	삼척시, 동해시, 태백시, 정선군	033-571-2120	강원 삼척시 하실길 58, 국민연금회관 삼척체육관 맞은편 (교동)
	홍천	홍천군, 인제군, 횡성군	033-439-5411	강원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64, 3층 KT홍천사옥 (홍천읍)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충남	천안	천안시	041-550-891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60, 국민연금공단천안지사 (청당동)
	홍성	홍성군, 예산군, 당진시	041-630-8130	충남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347, 2-3층 대왕빌딩 (홍성읍)
	보령	보령시, 청양군, 서천군	041-930-6630	충남 보령시 동현로 27, 국민연금공단 보령회관 (동대동)
	공주부여	공주시, 부여군	041-850-3820	충남 공주시 한적2길 27-5(신관동)
	서산태안	서산시, 태안군	041-419-3011	충남 서산시 호수공원3로 60, 5층 동일타워 (예천동)
	아산	아산시	041-420-2310	충남 아산시 충무로 22, 2-3층 (온천동)
충북	청주	청주시	043-251-5101	충북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362번길 20, 4층 국민연금공단청주지사 (서문동)
	충주	충주시, 제천시, 단양군	043-840-0704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42, 국민연금공단충주지사(금릉동)
	옥천	옥천군, 보은군, 영동군	043-730-273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문장로 96, 4층 하나로타워 (옥천읍)
	증평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	043-820-7111	충북 증평군 증평읍 중앙로 233, KT증평사옥 1층 (교동)
전남	목포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061-240-3301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6층 KT목포사옥 (호남동)
	해남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강진군, 장흥군	061-530-2301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교육청길 16-16, 국민연금해남회관 (해남읍)
	순천	순천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광양시	061-729-3001	전남 순천시 팔마로 334, 국민연금순천회관 (연향동)
	여수	여수시	061-660-5530	전남 여수시 공화북2길 24, 국민연금회관 (공화동)
	나주	나주시, 영광군, 함평군	061-820-0001	전남 나주시 나주로 21, 1층 KT나주빌딩 별관 (송월동)
전북	전주완주	전주시, 완주군	063-270-5303	전북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1-3층 국민연금빌딩 전주회관 (서신동)
	익산군산	익산시, 군산시	063-850-0322	전북 익산시 인북로12길 42, 익산회관 (주현동)
	정읍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063-530-5801	전북 정읍시 충정로 97, 국민연금정읍회관 (상동)
	남원순창	남원시, 순창군	063-620-3410	전북 남원시 의총로 116, 국민연금공단 남원회관 (동충동)
	진안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063-430-3501	전북 진안군 진안읍 학천변길 25, 국민연금진안사옥 (진안읍)
경남	창원	의창구, 성산구, 진해구, 창녕군	055-278-9040	경남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250번길 4, 국민연금 창원지사 (신월동)
	김해밀양	김해시, 밀양시	055-320-8341	경남 김해시 가락로 58, 4층 국민연금 김해밀양지사 (부원동)
	통영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055-650-8521	경남 통영시 광도면 신죽3길 16(광도면)
경남	진주	진주시, 하동군, 산청군	055-760-0637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 356(신안동)

시도	지사명	관할구	연락처	주 소
	마산	마산합포구, 마산회원구, 함안군, 의령군	055-290-4532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700, 11층 한화생명빌딩 (석전동)
	거창	거창군, 합천군, 함양군	055-940-4510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소만3길 56, 국민연금공단 거창회관 (거창읍)
	양산	양산시	055-371-1530	경남 양산시 물금읍 청운로 358, 1-3층 국민연금 양산회관 (물금읍)
	사천남해	사천시, 남해군	055-830-0811	경남 사천시 용현면 대밭담로 13(용현면)
경북	경주영천	경주시, 영천시	054-770-3901	경북 경주시 화랑로 125, 4층 KT경주지사 (성동동)
	포항	포항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054-280-0838	경북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 346, 8층 KT포항지사 (대도동)
	안동	안동시, 영양군, 의성군, 청송군	054-850-9010	경북 안동시 광명로 211, 국민연금공단안동지사 (옥동)
	문경	문경시, 상주시, 예천군	054-550-3301	경북 문경시 매봉로 45, 국민연금공단문경지사 (모전동)
	구미	구미시, 군위군, 칠곡군	054-450-8530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5, 2층 국민연금 구미지사 신한금융투자 (송정동)
	영주봉화	영주시, 봉화군	054-639-8011	경북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2~4층 (영주동)
	김천성주	김천시, 성주군	054-420-1611	경북 김천시 시청로 137, 3층 김천상공회의소 (신음동)
	경산청도	경산시, 청도군	053-722-5010	경북 경산시 경산로 154, 6층 KT경산빌딩 (사정동)
제주	제주	제주시	064-720-4200	제주 제주시 청사로3길 11-1, 국민연금 제주사옥 (도남동)
	서귀포	서귀포시	064-800-4511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 8532, 5층 축산업협동조합 (동홍동)

9.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제도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29364833

※ **가족돌봄휴가란?**
- 올해 1월 1일부터 근로자는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연간 최대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사용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용하려는 날,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생년월일,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적은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됨.
- 올해부터는 돌봄 대상 가족의 범위가 조손가정의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확대되어 조부모와 손자녀를 돌보기 위해서 가족돌봄휴직·휴가 사용 가능

○ **(지원 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 **(지원 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
*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 지원

○ **(지원금액)** 1일 5만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 1일 2만5천원 정액 지원

○ **(신청방법)**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

○ **(관련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 또는 인근 고용센터

10. [보건복지부] 긴급복지지원제도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mohw2016/221885006636

※ **긴급복지지원제도란?**
-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 ㅇ **(지원 대상)** 실직, 휴폐업, 중한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 위기 사유 발생 및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
- ㅇ **(시행 시기)** 한시적 시행(3월 23일~7월 31일)
- ㅇ **(지원 금액)** 총 3,656억 원
- ㅇ **(제도 개선)** 재산기준 완화, 금융재산 기준 완화, 지원횟수 제한 폐지,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 등
- ㅇ **(신청방법 및 관련문의)**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번)

11. 긴급재난지원금

☞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 가구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 지원 (4인이상 가구)

○ (지원수준) 소득하위 70% 이하 1,400만가구
: 4인이상 가구 기준 100만원 (가구원수별 차등 40~100만원)

* 1人 40만원, 2人 60만원, 3人 80만원, 4人이상 100만원

○ (지급방식)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 지급

○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건보료 하위 20~40%대상 보험료 30% 감면(3개월), 산재보험료 30% 감면(6개월), 국민연금 및 고용·산재보험료 납부유예(3개월), 전기요금 납부유예(3개월)

12. 사회보험료, 전기요금 부담 완화

1 [건강보험] 하위 40%까지 감면 대상 확대

□ (감면조치) 보험료 하위 20~40% 대상 3개월간 30% 감면

* 보험료 하위 20%(특별재난지역은 하위 50%)까지는 旣감면
*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 月소득 223만원

○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건보 감면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납기)	3월분(~4.10)	4월분(~5.10)	5월분(~6.10)
납부액	100% (△0%)	40% (△30%+△30%)	70% (△30%)

2 [국민연금] 납부유예 (3개월)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예외 확대*(신청시) + 연체금 미징수**

* (사업장가입자) 현행 실직·휴직(소득상실) 사유 + '소득감소'도 사유로 인정
(지역가입자) '소득감소' 인정범위 확대(현행 사업중단, 3개월 적자 등)

** 3월, 4월, 5월분은 연체금이 발생하지 않음

○ (대상) 전체 가입자중 희망자(소득감소 요건 충족)

○ (적용시기) 3~5월분까지적용 → 4.15일까지 신청시 3월분 유예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5월 환급(연체금 등 있는 경우 공제 후 환급)
* 5.15일까지 신청시 4~6월분 유예가능

< 국민연금 납부예외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부액	100% (기납부시)	△100% (환급)	0원	100%	100%	100%
	0원 (미납시)	0원				

* 6월 납부재개시 추납하지 않는 경우
(납부예외 기간에 대한 추납은 선택가능하며 추납분은 60개월까지 분납가능)

3 [고용보험] 납부유예 (3개월)

□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 미만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 고보 납부기한 연장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일	4.10→7.10	5.10→8.10	6.10→9.10	7.10	8.10	9.10
납부액	0원	0원	0원	200% (3월분 100% +6월분 100%)	200% (4월분 100% +7월분 100%)	200% (5월분 100% +8월분 100%)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4 [산재] 30인미만 사업장 등 대상 ❶납부유예(3개월) + ❷감면(30%, 6개월)

❶ (납부유예) 3개월간 납부기한 연장(신청시)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부터 적용 → 5.10까지 신청시 3월분부터 소급해서 납부기한 3개월 연장(5.10까지 3,4월분 연체금 없음)

* 3월분 기납부한 경우 6월 보험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검토

❷ (감면조치) 6개월간 30% 감면

○ (대상) 30인미만 사업장+1인 자영업자 + 특고 직종 사업장

○ (적용시기) 3월분(~3.26 고지)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감면

< 산재 감면 및 납부기한 연장 모두 대상시 월별 납부액 예시 >

대상	3월분	4월분	5월분	6월분	7월분	8월분
납기연장	4.10→7.10	5.10→8.10	6.10→9.10	7.10	8.10	9.10
감면	△30%	△30%	△30%	△30%	△30%	△30%
납부액	0원	0원	0원	140% (3월분 70% +6월분 70%)	140% (4월분 70% +7월분 70%)	140% (5월분 70% +8월분 70%)

* 유예분은 각각 3개월 후 납부

◇ 취약계층 3개월분 전기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

❶ (대상) 소상공인(320만호) + 저소득층 등(157.2만호)

*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광업, 제조업 등 10인) 미만 사업자('18년 전국사업체조사)
(저소득층 등) 기초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독립·상이유공('18년 한전 복지할인대상)

< 전기요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시 필요절차 >

소상공인	저소득층 등
▸ 계약전력 20kW 이하(소용량설비) ☞ **별도서류 不要**, 신청만으로 적용 ▸ 계약전력 20kW 초과 ☞ **소상공인확인서** 제출시 적용	▸ 한전이 복지할인가구에 대한 정보 보유 ☞ **별도서류 不要**, 신청만으로 적용

❷ (방식) 3개월분(4~6월 청구분)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기한연장 종료 후 '20년말까지 분할납부 가능(최대 7개월 연장효과)

  * 소상공인 등이 분할납부 개월수 등을 자유롭게 선택

- 소상공인 등 **문자**발송, **요금청구서**內 신청**안내** 등 홍보 강화

❸ (적용시기) 4월 최초 청구분(4.18일 예정)부터 적용

13. 코로나19 피해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관련정보] https://blog.naver.com/molab_suda/221884934769

1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 (지원내용) 광역지자체별 10만 명에게 생활안정지원금 월 50만원, 최대 2개월 간 지원

□ (문의) 각 지자체(지자체별 사업공고 예정)

2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 (지원내용)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의 구직활동범위를 확대하여 1만 6천 명에게 월 50만원을 최대 3개월간 지원

□ (문의) 가까운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국번없이 1350

3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내용) 5만 명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을 최대 6개월 간 지급
*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를 연속활용 할 수 있도록 개선

□ (문의) 온라인청년센터 1811-9876

4 소상공인 경영회복 지원

❶ 점포 재 개장
* 18만 9천개소에 최대 3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점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장 비용지원

○ (문의) 각 지자체

❷ 사업정리 지원
* 1만 9천개소에 최대 200만원 지원

○ (지원내용) 특별재난지역을 중심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 철거비 지원

○ (문의) 각 지자체

❸ 재기 지원

○ (지원내용) 교육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처리 예정

○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